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504-170011-10



2016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례보고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72길 23
TEL : 02-3473-9947, FAX : 02-3473-9949
http : www.debates.go.kr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2016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례보고서

열린 토론
바른 선택

ANNUAL
REPORT
2016

인사말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설립 이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종 공직선거를 위한 후보자토론회 등 법정 TV토론을 정치적 중립의 원칙 아래 공정하게 주관·진행함으로써 토론에 의한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선거방송토론 제도연구 및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과 함께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주적 토론문화의 확산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전국 51곳에서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 해였습니다. 이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368회, 기초자치단체장선거 15회의 후보자토론회·연설회 등 전국적으로 총 386회의 선거방송토론회와 3회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및 정당정책토론회 2회를 개최하는 등 법정 TV토론이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별도의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사이트 구축, 네이버를 통한 생중계 및 다시보기 등 유권자 중심의 선거방송토론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공모 및 여론조사 등 유권자들의 참여 기회도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토론의제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토론회 진행방식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후보자 맞춤형 강좌를 개설하여 후보자들의 TV토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노력은 지난 한 해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고등학생·대학생 토론대회와 유권자 대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선거투·개표

및 찬반토론 체험 교육기부 프로그램, 토론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그리고 선거연수원과의 협업으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희망자가 참가한 '예비정치인을 위한 선거연설 및 TV방송토론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민주화 30년이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2017년을 맞이하여 선거와 선거방송토론의 의미 및 중요성, 영화 속 선거이야기 등 일반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이야기 한마당 선거방송토론 토크콘서트를 대중 친화적 복합 문화공간인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개최하여 관심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한 해의 업무를 성찰적으로 되돌아보고 사료로 보존하기 위하여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6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례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의 노력과 결실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우리나라 선거방송토론 제도 및 토론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유용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최은수

2016 연례보고서 목차

제1장

11

일반현황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 12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연혁 12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회의 운영 16
5. 사무기구의 설치 등 16
6.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직무 17

제2장

19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1. 후보자토론회의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 20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24

제3장

39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 40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국민모니터링 운영 40
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워크숍 42
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회 및 세미나 개최 42
5.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발간 44

제4장

45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1.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46
2.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홍보 49

제5장

51

정책토론회 관리

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관리 52
2.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57

제6장

71

민주시민토론문화 육성

1.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대토론회 개최 72
2. 제12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73
3.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지원..... 76
4. 토론전문 교육과정 운영..... 80
5.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81
6.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 ‘선거연설 및 TV방송토론’ 과정 운영 ... 83
7. 선거방송토론 토크콘서트 개최..... 84
8.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협력체제 구축 86

제7장

91

제도개선 연구

1.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92
2. 선거방송토론 연구반 운영..... 92

제8장

95

부록

1. 2016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표 96
2. 2016 토론회 토론진행표 99
3.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107

2016 연례보고서 표목차

[표 1-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혁	12
[표 1-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현황	14
[표 1-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명단	14
[표 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명단	16
[표 1-5]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17
[표 2-1]	입후보예정자 대상 '선거방송 TV토론 강좌' 개최 현황	21
[표 2-2]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24
[표 2-3]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25
[표 2-4]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 현황	26
[표 2-5]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설명회 개최 현황	27
[표 2-6]	역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시청률 현황	30
[표 2-7]	네이버를 통한 생중계 및 다시보기 현황	30
[표 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개최 현황	31
[표 2-9]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중계방송일자별 현황	32
[표 2-10]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중계방송시간대별 개최 현황	32
[표 2-11]	중계주관방송사 현황	32
[표 2-12]	중계방법 현황	33
[표 2-13]	후보자별 토론회 등의 참석 현황	33
[표 2-14]	정당별 불참 후보자 현황	33
[표 2-15]	후보자토론회 불참사유 현황	34
[표 2-16]	사회자 선정 현황	34
[표 2-17]	토론의제 수집 방법	34
[표 2-18]	토론주제 선정 현황	35
[표 2-19]	진행방식 사용 현황	35
[표 2-20]	홍보 현황	36
[표 2-21]	후보자토론회 관련 릴레이 기고 현황	36
[표 2-2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실시 현황	37
[표 2-23]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현황	37
[표 3-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요	43
[표 4-1]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유형	46

[표 4-2]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중계방법 현황	47
[표 4-3]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개최 현황	47
[표 4-4]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홍보 현황	49
[표 5-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52
[표 5-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53
[표 5-3]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제 선정 현황	54
[표 5-4]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55
[표 5-5]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58
[표 5-6]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59
[표 5-7]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59
[표 5-8]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현황	60
[표 5-9]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주제 및 세부논점	60
[표 5-10]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61
[표 5-11]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64
[표 5-12]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64
[표 5-13]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65
[표 5-14]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65
[표 5-15]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현황	66
[표 5-16]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분야 및 주제	66
[표 5-17]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67
[표 5-18]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네이버 생방송 접속자 수	70
[표 5-19]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70
[표 6-1]	제12회 전국대학생토론회 토론회 주제	73
[표 6-2]	제12회 전국대학생토론회 시상내역	75
[표 6-3]	2016 고등학생토론회 개최 현황	76
[표 6-4]	토론전문 교육과정 시간표	81
[표 6-5]	2015~2016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요	82
[표 7-1]	선거방송토론 연구반 편성	93
[표 7-2]	주요 연구과제	93

2016 연례보고서 사진목차

[사진 2-1]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회의	21
[사진 2-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 TV토론 강좌	22
[사진 2-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23
[사진 2-4]	초청 정당 대상 설명회	28
[사진 2-5]	초청 외 정당 대상 설명회	28
[사진 2-6]	비례대표후보자토론회(초청 1차)	29
[사진 2-7]	비례대표후보자토론회(초청 2차)	29
[사진 2-8]	비례대표후보자토론회(초청 외)	29
[사진 2-9]	수어통역 세트	29
[사진 2-10]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37
[사진 3-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워크숍	42
[사진 3-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회 및 세미나	43
[사진 3-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44
[사진 5-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설명회	55
[사진 5-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회장 설비(1~3차)	56
[사진 5-3]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회 원형 구조물 및 수어통역 세트	56
[사진 5-4]	전문위원회의	59
[사진 5-5]	준비소위원회의	59
[사진 5-6]	전체 위원회의	59
[사진 5-7]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61
[사진 5-8]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회장 구조 및 수어통역 세트	62
[사진 5-9]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로고와 슬로건 활용	62
[사진 5-10]	주제 선정 과정 자막 표출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 활용	63
[사진 5-11]	토론자의 참고자료 사용	63
[사진 5-12]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67
[사진 5-13]	포털사이트(네이버)를 통한 개최 홍보	68
[사진 5-14]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회장 설비	68

[사진 5-15]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회 진행	69
[사진 6-1]	제5회 유권자의 날 유권자 대토론회	73
[사진 6-2]	제12대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현장	74
[사진 6-3]	제12대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결선	75
[사진 6-4]	제12대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시상식 및 기념촬영	76
[사진 6-5]	제6회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78
[사진 6-6]	제6회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79
[사진 6-7]	제2회 빛고을(광주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80
[사진 6-8]	토론전문 교육과정	81
[사진 6-9]	2015 겨울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82
[사진 6-10]	2016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82
[사진 6-11]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 '선거연설 및 TV방송토론'	83
[사진 6-12]	선거방송토론 토크콘서트 홍보 웹포스터	84
[사진 6-13]	선거방송토론 토크콘서트 개최	85
[사진 6-14]	NEC-TV 뉴스보도(NEC-TV 제공)	85
[사진 6-15]	국회방송 뉴스보도(국회방송 제공)	85
[사진 6-16]	다같이 토론학교 운영	87
[사진 6-17]	학생자치회임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87
[사진 6-18]	민주시민 토론아카데미	88
[사진 6-19]	소통·공감의 학생 토론마당	8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 장 일반현황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연혁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회의 운영
5. 사무기구의 설치 등
6.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직무

제 1 장 일반현황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의한 대담·토론회, 같은 법 제82조의3에 의한 정책토론회 및 「정당법」 제39조에 의한 정책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에 설치하는 상설기구이다.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연혁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1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16개), 국회의원선거구별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181개)가 각각 창설되었다.

[표 1-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혁

(단위 : 개)

일 자	근 거	현 황			
		계	중앙	시·도	구·시·군
2004. 3.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법률안에 따라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	-	-	-
2004. 3. 15.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	1	-	-
2004. 3. 29. 까지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16)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181) 창설	198	1	16	181
2008. 3. 21.	•천안시 분구에 따른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폐지 ※ 증설(↑2) : 천안시서북구·천안시동남구위원회 ※ 폐지(↓1) : 천안시위원회	199	1	16	182

일 자	근 거	현 황			
		계	중앙	시·도	구·시·군
2008. 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 ※ 증설(↑67) : 국회의원선거구위원회가 아닌 구·시·군위원회 단위 설치 	266	1	16	249
201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폐지 (249개→251개) ※ 증설(↑5) : 창원시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위원회 ※ 폐지(↓3) : 창원시·마산시·진해시위원회 	268	1	16	251
2012.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특별자치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연기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폐지 	268	1	17	250
2014.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폐지 (250개→251개) ※ 증설(↑4) : 청주시상당구·청주시서원구·청주시흥덕구·청주시청원구위원회 ※ 폐지(↓3) : 청주시상당구·청주시흥덕구·청원군위원회 	269	1	17	251
2016.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명칭변경 (251개→251개) ※ 부천시원미구→부천시갑, 부천시소사구→부천시을, 부천시오정구→부천시병 	269	1	17	251

2008년 3월 21일 「천안시 구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제정(2008. 3. 21.)으로 천안시에 자치구가 아닌 천안시서북구와 천안시동남구가 설치됨에 따라 천안시서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천안시동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기존 천안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폐지되었다.

2008년 4월에는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5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67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수는 중앙과 16개 시·도를 포함하여 모두 266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0년 7월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창원시가 설치되고,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통합 창원시에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등 5개 구가 설치됨에 따라 각 구별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설되었고, 기존의 창원시·마산시·진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폐지되었다. 그 결과 249개였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수는 251개로 늘어났다.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어 기존의 연기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폐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수는 1개가 늘어 17개가 되었고,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수는 1개 축소된 250개가 되었다.

2014년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청주시가 설치되어 청주시상당구·청주시서원구·청주시흥덕구·청주시청원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청주시상당구·청주시흥덕구·청원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수는 1개가 늘어나 251개가 되었다.

2016년 7월 4일 부천시원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부천시갑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부천시 소사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부천시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부천시오정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부천시병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에 1개, 시·도에 17개, 구·시·군에 251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시에 행정구가 폐지되면, 기존의 부천시갑·을·병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폐지되고 부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설된다.

[표 1-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현황

(2016. 12. 31 현재)

구분	위원회수	지역별																
계	269	-																
중앙	1	-																
시·도	1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시·군	251	25	16	8	10	5	5	5	-	44	18	14	16	15	22	24	22	2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 이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2016년 3월 17일 국민의당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국민의당이 추천한 1명을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였기 때문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정수는 1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명단

(2016. 12. 31 현재, 위촉일순)

직 위	성 명	직 업	추천기관
위원장	최은수	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남택용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직 업	추천기관
위 원	성한용	언론인	더불어민주당
	허익범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오미영	교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기원	방송인	MBC
	박유성	교 수	학 계
	김진수	방송인	KBS
	박상기	교 수	시민단체
	손교명	변호사	새누리당
	강신업	변호사	법조계
	정병운	교 수	국민의당

※ 2016년 4월 6일 국민의당 추천으로 정연정 위원이 해촉되고 정병운 위원이 위촉됨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위원장 호선 및 상임위원 지명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겸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상임위원 1인을 둔다. 2016년 3월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정희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6년 3월 25일 최은수 위원을 제5대 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

4) 위원의 신분과 권한 및 의무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으로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등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아니면 해임되지 않으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각급선거

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이 위원
의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회의 운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
여야 하지만, 해당 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의에
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의사결정에 있어
투표권은 있으나, 표결결과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Casting Vote)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대담·토론의 진행방식,
주제·질문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방송 또는 선거 관련 전문
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표 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명단

(2016. 12. 31. 현재, 위촉일순)

성명	경력
박희봉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배	JTBC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장
이진로	영산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신창운	덕성여대 사회학과 강의조빙교수
조성남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장석인	공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김익상	서일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장혜영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5. 사무기구의 설치 등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두며,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간사장 및 간사를 둔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으로 하여금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직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관리 사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정한 정책토론회 관리,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토론회 기법 연구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개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영방송사 등이 중계방송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등은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유권자는 후보자들을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표 1-5]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주관	종류	선거별	개최시기	횟수	근거법률
중앙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2회 이상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임기만료선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일까지	월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정당 정책토론회	-	연중 (단,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제외)	연2회 이상	「정당법」 제39조

주관	종류	선거별	개최시기	횟수	근거법률
시·도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중	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교육감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구·시·군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2)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는 「공직선거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의 대표자 등을 초청하여 월 1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에는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 등을 초청하여 연 2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3)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토론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 주변에 민주시민 토론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매년 전국대학생토론대회 및 시·도별 고등학생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토론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타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토론대회 및 학교입원 선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방송토론 운영을 위한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실무과정을 운영하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TV토론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4) 토론회 등의 기법 연구 및 개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들이 토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각종 토론회의 진행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관 학회, 기관·단체들과 교류·협력하고, 법·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후원하며, 전문가 집단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제 2 장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1. 후보자토론회의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제 2 장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1. 후보자토론회의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

1) 관리기반 조성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미디어 시대의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대응하고 높아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무절차 및 관련 법규를 정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회의록 공개의 기준과 방법 등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관리를 체계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8호, 시행 2015. 11. 12.)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5-1호, 2015. 11. 18., 시행 2016. 1. 1.)¹⁾을 제정하였다. 특히, 후보자토론회 관련 사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간사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임전결권 등 의사결정 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법적 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무절차의 통일과 체계화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을 개정하고, 제18대·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5회·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에서 발생했던 사건·사고 사례들을 통합하여 2016년 1월 「선거방송토론 사무관리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선거연수원 등과 협력하여 실무담당자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이를 활용함으로써 사무 처리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였다.

1)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8일 관보 제18640호(273-278쪽)에 고시되었으며, 전자관보 사이트(<http://gwanbo.moi.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회의 개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6년 3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전국 17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현안인 ‘위원회의 공개·비공개 결정’, ‘선거방송토론을 위한 특정시간대 확보 및 유용성 제고’, ‘방송권역이 상이한 지역공영방송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TV토론 정기 강좌 실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입장 발표’를 통해 후보자 TV토론회가 정책선거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후보자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치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사, 정당, 후보자 등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진 2-1]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회의

2016년 3월 17일에는 ‘국민의당’이 새롭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국민의당이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 1명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 후보자토론회 개최에 공정성을 더하였다.

2) 후보자 토론 역량 강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들의 TV토론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선거연수원에 개설된 ‘선거아카데미’ 강좌에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방송 TV토론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표 2-1] 입후보예정자 대상 ‘선거방송 TV토론 강좌’ 개최 현황

구분	주관 위원회 (대상 시·도)	개최일	개최장소	참가현황(명)		
				신청	선정	참가
계	-	-	-	185	166	114
수도권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울·인천·경기·강원)	1. 20.(수)	서울MBC아카데미	58	40	35

구분	주관 위원회 (대상 시·도)	개최일	개최장소	참가현황(명)		
				신청	선정	참가
충청권	대전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전·세종·충북·충남)	1. 29.(금)	대전MBC스튜디오	43	42	25
호남권	광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광주·전북·전남·제주)	1. 25.(일)	광주MBC스튜디오	44	44	24
영남권	대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1. 26.(화)	대구MBC스튜디오	40	40	30



[사진 2-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 TV토론 강좌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016년 1월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²⁾』의 개정·증보판을 2,300부 발간하여 후보자들이 활용하도록 배부하고,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방송 TV토론 강좌’에서 교재로 활용하였다.

그 밖에 선거기간개시일(2016. 3. 31.)부터 사전투표일 전일(2016. 4. 7.)까지를 ‘후보자 TV토론 주간’으로 정례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토론회의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후보자토론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3) 유권자 중심의 토론회 인프라 구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향후 법령 개정이나 선거환경 변화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업무영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국민참여’ 메뉴에 ‘위원회의 공개’, ‘정보공개’ 라는 하위 메뉴를 신설하였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토론회 다시보기’와 ‘대학생토론회’ 등의 메뉴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치하였다. 그 밖에 위원회의 간행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단 ‘자료실’에 ‘간행물’을 하위 메뉴로 신설하여, 현재까지의 연도별 주요 간행물들을 PDF파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앙

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debates.go.kr/>)에 PDF파일 게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매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 전후에 개최하는 ‘유권자대토론회’와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동·하계 방학기간에 운영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내용을 ‘토론편’의 하위 메뉴에 추가하였다. 또한, 관리자 모드에서 팝업존 기능, 디데이(D-Day) 기능, 사진·동영상·기타 게시물 등의 직관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User Interface)를 채택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토론회 다시보기’를 별도로 구축한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사이트와 연동시켜 유권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후보자 TV토론회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였다. 유권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 웹을 통한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사이트(<http://www.tvdebate.co.kr>)를 구축하여 전국 253개 선거구 후보자토론회의 영상 및 자막을 제공하였다.³⁾ 특히, 27개 관심 지역구의 후보자토론회에서는 네이버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다시보기 서비스는 총 1,199,379명(2016. 4. 13. 기준 : 다시보기 사이트 908,255명, 네이버 291,124명)이 접속한 것으로 파악되어,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347,982명) 대비 3배 이상의 큰 효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정책토론회의 주제 및 질문 선정 과정에 국민(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 내용은 각 차수별 공식선거정책토론회의 주제 선정에 반영하였고, 제3차 토론회에서는 사회자 질문 선정 시 국민제안공모 내용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식선거정책토론회(3회)와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3회)의 평가를 위한 국민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사진 2-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한편, 경기도 시흥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아름다운 토론학교’를 개설하여 미래유권자들을 후보자토론회에 참관하게 하는 등 특화사업을 실시하였고, 전라남도 장흥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는 종료되었고, 본 서비스에서 제공된 후보자토론회 영상은 선거정보도서관 (<http://elecinfo.nec.go.kr>)에서 다시 볼 수 있음.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송토론과정을 참관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토론회를 완벽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정책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토론회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진행능력과 중립성을 겸비한 인사를 사회자로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의미 있는 토론의제 및 효율적인 진행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토론 진행의 공정성에 역점을 두었다.

토론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조기에 결정하여 정당 및 방송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토론자(총 20개 정당 : 초청대상 4명,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당 16명)로 참여한 각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 등⁴⁾은 사전 준비를 통해 충실한 상호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당이 16개나 되어 세트 준비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방송사와의 원만한 업무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되었다.

[표 2-2]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구분	제 1 차	제 2 차	초청 의 정당
개최일시	2016. 4. 4.(월) 10:00~12:00(120분)	2016. 4. 7.(목) 10:00~12:00(120분)	2016. 4. 6.(수) 14:00~16:00(120분)
개최장소	MBC B 스튜디오	KBS TS-4 스튜디오	MBC 공개홀
토론분야	경제·노동·복지	정치·사회	초청대상 토론의 전 분야
토론자	김종석(새누리당)	유민봉(새누리당)	고영일(기독교자유당) / 김민석(민주당) / 류승구(가자코리아) / 김재근(강제동월일제피해·일본군위안부인권정당) / 박세준(개혁국민신당) / 황정애(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 이대마(그린불교연합당) / 박두식(기독민주당) / 용혜인(노동당) / 신지예(녹색당), 김선동(민중연합당) / 이상구(복지국가당) / 김경세(친반통일당) / 최인식(통일한국당) / 김만근(한국국민당) / 김용균(한나라당) ※ 공화당 불참
	최운열(더불어민주당)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채이배(국민의당)	이상돈(국민의당)	
	조성주(정의당)	김종대(정의당)	
사회자	신동호(MBC 국장)	백운기(KBS 해설위원)	신동호(MBC 국장)

4) 토론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함.

5)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당을 말함(이하 같음).

구분	제 1 차	제 2 차	초청 외 정당
중계주관방송사	MBC	KBS	MBC
중계방송	KBS, MBC 동시생중계		

(1) 개최일시 및 장소 등 결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의 정당투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초청대상 정당의 후보자토론회(2회)와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당의 후보자토론회(1회)를 모두 사전투표기간⁶⁾(2016. 4. 8. ~ 9.)이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공영방송사(KBS, MBC)의 편성부서 및 토론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 이용일자 및 시간대 등을 전체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후보자토론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최 장소는 각 중계주관방송사의 스튜디오를 이용하였다.

(2) 소위원회 구성·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을 작성·검토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방송사 추천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준비소위원회를 토론회 종료 시까지 운영하였다.

[표 2-3]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명칭	운영 기간	구성 위원	직무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준비소위원회	2016. 3. 11. ~ 4. 7. (토론회 종료시까지)	추형관, 허익범, 오미영 송기원, 김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식(안) 검토 • 토론주제(안) 검토 • 질문사항(안) 검토 • 사회자 검토(필요시)

(3) 초청대상 정당 선정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을 토대로 할 때,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새누리당(146석), 더불어민주당(102석), 국민의당(21석), 정의당(5석)이었다. 정당별 직전 선거의 득표율 현황에 따라 정당별 직전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었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수집하기 위해 언론기관 현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별로 담당할 방송사와 신문사를 분류하여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2016. 3. 1.)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16. 3. 30.)까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다.

6) 선거일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의 기간'을 말함.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에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해당되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의원 의석수, 득표율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초청대상 4개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17개 정당으로 구분하여 정당을 선정하고, 해당 정당에 참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초청대상 정당은 모두 비례대표후보자를 토론자로 하여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공화당은 불참을 통보해 왔다.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16개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에는 후보자가 11명, 후보자가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4) 사회자 선정

토론회의 사회자는 각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사회·방송 경력 등을 바탕으로 준비소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초청대상 1차와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의 사회자는 ‘신동호(MBC 국장)’, 초청대상 2차 토론회의 사회자는 ‘백운기(KBS 해설위원)’로 선정하였다.

(5) 토론의제 수집 및 주제 선정

주제 선정에 앞서 각 정당과 기관 및 단체, 전문위원 등에게 토론의제 추천을 의뢰하고, 공식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수집한 의제와 각 정당의 공약 및 정책 발표 현황을 자체적으로 수집하였다. 또한,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정치·사회·경제·노동·복지 분야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전문위원회의를 통해 각 분야별 핵심 현안이 균형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설문조사 항목을 검토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가 참석하는 점을 고려하여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경제·노동·복지 분야에서 3개, 정치·외교·사회 분야에서 3개 등 총 6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표 2-4]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 현황

구분		분야	주제	진행방식
초청	1차	경제·노동·복지	경기 침체 극복 방안 / 일자리 대책 / 저출산·보육 정책	사회자 공통질문 / 토론자 자유토론 / 주도권토론/맺음말
	2차	정치·사회	정치 쇄신 방안 / 남북·외교 문제 /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	
초청 외 정당		전분야	각 당의 대표 공약	기조연설 / 사회자 공통질문 / 맺음말

질문사항은 토론주제가 선정된 후에 전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에서 검토하여 작성한 후 전체 위원회의에서 선정하였다. 특히, 준비소위원회의에 사회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선정된 질문요지 등은 사전에 각 정당에 안내하였다.

(6) 진행방식 결정

진행방식은 토론회의 성격과 참석 토론자 수를 고려하여 전문위원회의 및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유권자가 각 정당의 공약과 정책을 상호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초청대상 정당의 후보자토론회는 각 주제별 자유토론 후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지는 방식,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당의 후보자토론회는 기초연설 후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초청대상 정당의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은 기초연설을 대신하여 토론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이은 후보자의 답변을 시작으로, 토론자별 각 5분씩의 범위 내에서 주제별 자유토론을 하고, 종합적으로 토론자별 총 7분의 주도권토론, 맺음말을 위한 각 1분의 발언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당의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은 '각 당의 기초연설 → 사회자 공통질문 후 답변(1회) → 맺음말' 순서로 결정을 하되, 비례대표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의 수가 유동적이므로 15~25인까지 참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간배정을 달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 불참을 통보한 정당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토론자 수가 줄어들 경우를 대비하여 11~14인까지 토론자가 참석한 경우의 시간배정에 관해 준비소위원회의에서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의에 보고하여 진행방식을 결정하였다.

(7) 설명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자 안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는 정당관계자 및 토론자, 토론자의 대리인 등이 참석하여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 순서를 추첨하였다. 기호 순에 따라 차수별로 번갈아 '추첨 순서'를 추첨하고, 그에 따라 '토론자별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하여 동시에 결정하였다.

[표 2-5]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설명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초청 정당	2016. 4. 2.(토), 10:00	위원회의실
초청 외 정당	2016. 4. 2.(토), 14:00	위원회의실



[사진 2-4] 초청 정당 대상 설명회



[사진 2-5] 초청 외 정당 대상 설명회

(8) 토론회 개최 홍보

토론회 개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안내 팝업을 게시하여 홍보하였다. 또한, 토론회의 방송일시, 토론자, 토론주제 등 안내 자막방송이 화면에 표출될 수 있도록 해당 중계방송사에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토론회를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네이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특집페이지에 생중계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방송매체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유권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웹을 통해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토론회 개최 전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토론회 진행 중에도 보도사진을 촬영하여 언론사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토론회 종료 후에도 보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언론의 관심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이슈에 집중되어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9) 토론회장 설비

토론회 장소는 중계주관방송사의 스튜디오를 이용함에 따라 방송제작진과 진행방식 등 토론회의 구성과 형식에 적합한 설비가 되도록 협의하였다. 세 차례의 토론회 모두 토론자와 사회자가 마주 보는 맞대면 구조로 배치하여 토론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세트 중앙 원형구조물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통합이미지와 슬로건 '열린토론 바른선택'을 활용하였고, 사회자와 토론자가 사용하는 물 컵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슬로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인쇄하여 활용함으로써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수어⁷⁾방송을 위한 수어통역 세트를 별도로 설비하였다.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당의 후보자토론회는 역대 최다의 토론자가 참석하여 세트 설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주관방송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형 스튜디오(공개홀)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 참석 토론자 수에 변경이 있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통 테이블을 제작하여 설비하고, 정당명을 기재한 명패를 올려놓아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7)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수화언어'를 말함.



[사진 2-6] 비례대표후보자토론회(초청 1차)



[사진 2-7] 비례대표후보자토론회(초청 2차)



[사진 2-8] 비례대표후보자토론회(초청 외)



[사진 2-9] 수어통역 세트

(10) 토론회 진행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토론회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출입증을 패용한 관계자만 출입을 허용하였고, 각 정당 및 후보자측 관계자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특히,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당의 경우 토론회 당일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후보자의 시간 계획과 동선을 미리 파악하여 4개 그룹별로 도착시간·분장시간·스튜디오 입장시간을 지정하고, 주요 동선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원과 중계주관방송사의 소속 스태프를 배치하여 토론자가 방송국에 도착하여 스튜디오에 입장할 때까지 불편이 없도록 조직적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토론회 도중 돌발적 질서문란 행위자는 사회자의 권한으로 방송국 안전요원이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준비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스튜디오 내부 및 입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중계주관방송사에 요청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 토론회 진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라는 문구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자막으로 표출하였다. 그 밖에 2013년 고시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관리규정」의 중계방송 관련 규정을 방송관계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균형적이고 공정한 화면을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소속정당의 선거운동용 윗옷과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참석하였으며, 토론회장에 지참한 자료의

분량⁸⁾에 대해서도 거듭 안내하여 토론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11) 토론회 시청률

역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시청률과 비교하면 이번 국회의원선거 제1차 토론회는 3.0%, 제2차 토론회는 2.7%,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당의 토론회는 1.3%를 보여 다소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표 2-6] 역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시청률 현황

(단위 : %)

구 분		AGB(전국기준)			
		KBS1	MBC	SBS	계
제18대 국선	초청 1차	2.8	1.2	-	4.0
	초청 2차	1.8	1.2	-	3.0
	초청 외 정당	0.9	0.9	-	1.8
제19대 국선	초청 1차	3.1	0.8	1.1	5.0
	초청 2차	2.2	0.8	0.7	3.7
	초청 외 정당	1.2	0.3	0.5	2.0
제20대 국선	초청 1차	1.8	1.2	-	3.0
	초청 2차	1.6	1.1	-	2.7
	초청 외 정당	0.8	0.5	-	1.3

총 3회에 걸쳐 개최된 비례대표후보자토론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특집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하였으며, 제1차 토론회는 1,163명, 제2차 토론회는 5,897명,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당의 토론회는 2,992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방송매체의 다양화를 고려하고, 평일 오전 시간대에 생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2-7] 네이버를 통한 생중계 및 다시보기 현황

(단위 : 명, 건)

구 분	계	초청 1차	초청 2차	초청 외 정당
생중계(접속자 수)	10,052	1,163	5,897	2,992
토론회 다시보기(조회 수)	77,091	40,551	21,861	14,679

8) 2016년 실시한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는 후보자가 A4 용지 규격 이내 20장 이하의 날장자료 외에는 지침물을 소지할 수 없었으나, 이후 2017. 1. 2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관리규정」 제9조를 개정하여 토론회에서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 등의 참고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2016. 3. 31. ~ 4. 12.) 전국 252개⁹⁾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 등 총 368회의 선거방송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역별로는 선거구 수가 많은 경기도가 80회, 서울시가 78회 개최하는 등 선거구별 평균 1.45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대담 9회, 토론회 240회, 연설회 119회를 개최하였고, 지역별 개최 현황은 [표 2-8]과 같다.

[표 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토론				대담			연설			
		소계	초청	초청 외 ¹⁰⁾	합동	소계	초청	초청 외	소계	초청	초청 외	합동
합계	368	240	233	1	6	9	9	-	119	1	115	3
서울	78	48	47	-	1	1	1	-	29	-	29	-
부산	27	16	16	-	-	2	2	-	9	-	9	-
대구	16	9	8	-	1	1	1	-	6	-	4	2
인천	17	13	13	-	-	-	-	-	4	-	4	-
광주	16	9	8	1	-	-	-	-	7	-	7	-
대전	12	7	7	-	-	-	-	-	5	-	5	-
울산	9	6	6	-	-	-	-	-	3	-	3	-
세종	2	1	1	-	-	-	-	-	1	-	1	-
경기	80	59	57	-	2	1	1	-	20	-	20	-
강원	10	8	8	-	-	-	-	-	2	-	2	-
충북	10	8	8	-	-	-	-	-	2	-	2	-
충남	15	11	11	-	-	-	-	-	4	-	4	-
전북	15	10	10	-	-	-	-	-	5	-	5	-
전남	19	10	10	-	-	-	-	-	9	-	9	-
경북	16	8	7	-	1	3	3	-	5	1	3	1
경남	22	14	13	-	1	1	1	-	7	-	7	-
제주	4	3	3	-	-	-	-	-	1	-	1	-

※ 무투표선거구(경남통영시·고성군) 제외

9) 무투표선거구인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외

10)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말함(이하 같음).

이번 선거에서 합동토론회는 서울 은평구갑, 대구 서구, 경기 고양시갑, 경기 용인시정,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서 총 6회 개최하였고, 합동방송연설회는 대구 달서구갑, 대구 달서구병, 경북 구미시갑에서 총 3회 개최하였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등

‘후보자 TV토론주간(2016. 3. 31. ~ 4. 7.)’을 지정·운영한 결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총 368회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중 97.3%인 총 358회를 사전투표일 전에 개최(방송)하였다.

[표 2-9]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중계방송일자별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3. 31	4. 1	4. 2	4. 3	4. 4	4. 5	4. 6	4. 7	4. 8	4. 9
합계	368	11	23	17	33	47	79	81	67	10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중계방송은 오전시간대(07:00~13:00) 85회, 오후시간대(13:00~19:00) 96회, 저녁시간대(19:00~23:00) 146회, 심야시간대(23:00~25:00)에 41회 개최되었다.

[표 2-10]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중계방송시간대별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07:00~ 09:00	09:00~ 11:00	11:00~ 13:00	13:00~ 15:00	15:00~ 17:00	17:00~ 19:00	19:00~ 21:00	21:00~ 23:00	23:00~ 25:00
합계	368	3	57	25	47	16	33	54	92	41

유권자들의 시청이 용이한 저녁 7시부터 11시 사이에 방송된 후보자토론회는 146회로, 39.7%를 차지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93회, 31.4%) 대비 황금시간대 점유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계방송은 여전히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사별 중계주관 현황을 보면 지상파방송사가 197회로, 공영방송사는 189회(KBS 92회, MBC 97회), 민영방송사는 8회 방송하였고, 종합유선방송사는 171회 방송하였다.

[표 2-11] 중계주관방송사 현황

(단위 : 회)

구분	방송 횟수	지상파				종합유선 방송사	종합편성 채널	인터넷 언론사 등	기타
		소계	KBS	MBC	민영 방송사				
합계	368	197	92	97	8	171	-	-	-

주관 방송사가 단독으로 중계방송한 경우는 토론회 211회, 대담 11회, 연설회 105회이고, 2개 이상의 방송사가 동시중계한 경우는 토론회 30회, 연설회 11회로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재방송은 토론회 80회, 대담 1회, 연설회 42회, 총 123회가 실시되었으며, 특히, 서울(64회)·경기(59회)지역에서만 실시되어 종합유선방송사가 주로 재방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중계방법 현황

(단위 : 회)

구분	중계방송									재방송			
	개회 횟수	주관방송사 단독중계방송				2개 이상 방송사 동시중계방송				소계	토론	대담	연설
		소계	토론	대담	연설	소계	토론	대담	연설				
합계	368	327	211	11	105	41	30	-	11	123	80	1	42

(2) 토론회 초청대상 선정 현황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253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경쟁률은 평균 3.7:1로서¹¹⁾, 제19대와 동일하고 제18대(4.5:1)보다 낮았다. 토론회 참석 후 사퇴한 4명을 포함한 총 938명의 후보자 중에서 초청대상 후보자 740명,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 172명이 후보자토론회 등에 참석하였으며, 초청대상 후보자 16명(토론회 15명, 연설회 1명),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 5명이 토론회 등에 불참하였다.

[표 2-13] 후보자별 토론회 등의 참석 현황

(단위 : 회)

구분	후보자 수	대담·토론회						연설회						무투표 당선	비고	
		초청대상			초청대상 외			초청대상			초청대상 외					
		소계	참석	불참	소계	참석	불참	소계	참석	불참	소계	참석	불참			미개회
합계	938	751	736	15	8	8	-	5	4	1	173	164	5	4	1	-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 등에 불참한 후보자는 총 21명으로, 이 중 당선자는 7명이며 모두 초청대상 후보자였다.

[표 2-14] 정당별 불참 후보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불참 후보자 수	15	10	2	1	2

※ 제19대(7명) : 새누리당 4, 통합민주당 1, 자유선진당 1, 친박연합 1

11) 후보자 수 944명 : 등록 934명, 사퇴/사망/등록무효 10명

초청대상 후보자의 불참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3명, 선거운동 일정 3명, 비방 또는 인신공격 개연성 2명, 당내 직책의 특수성으로 인한 불참이 2명 등으로 나타났다. 후보자토론회에 불참한 총 15명의 초청대상 후보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12명에게 각각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표 2-15] 후보자토론회 불참사유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건강상의 이유	가족 위독	불리 판단	비방/인신 공격 개연성	당내 직책 특수성	시간적 제약	구속 수감	선거운동 일정	기타
후보자수	15	3	1	1	2	2	1	1	3	1

(3) 사회자 선정 현황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 등의 사회자는 학계(140회), 중계방송사 종사자(125회)를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1인 연설회의 경우 사회자를 두지 않고 진행하였다.

[표 2-16] 사회자 선정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학계	방송·언론계	시민 단체	법조계	중계 방송사	위원	기타	사회자 없음 (1인연설)
합계	368	140	59	-	12	125	7	4	21

(4) 토론의제 수집 및 주제 선정

토론의제의 수집 방법으로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방법이 454건(3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론조사 187건(16.0%), 전문가 단체 추천 181건(15.5%), 후보자 공약사항 151건(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 비교할 때¹²⁾,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수집 방법은 10.8%, 전문가 단체 추천을 통한 수집은 5.7% 증가하였다.

[표 2-17] 토론의제 수집 방법

(단위 : 건)

구분	계	여론조사	전문가 단체 추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후보자 공약사항	기타
합계	1,169 (100%)	187 (16.0%)	181 (15.5%)	454 (38.8%)	151 (12.9%)	196 (16.8%)

12) 여론조사(15.5%), 전문가 단체 추천(9.8%),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28.0%), 후보자 공약(16.1%), 기타(30.6%)

후보자토론회에서 다루어진 토론주제로는 경제 분야가 331건(2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 156건(11.0%), 복지138건(9.8%), 노동 119건(8.4%), 후보자 공약 110건(7.8%), 지방자치 109건(7.7%), 정치 94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8] 토론주제 선정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분야													후보자 공약	개인 신상	
		정치	선거	지방자치	외교 안보 통일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문화	여성	환경			기타
합계	1,415 (100%)	94 (6.6%)	5 (0.4%)	109 (7.7%)	65 (4.6%)	331 (23.4%)	119 (8.4%)	138 (9.8%)	156 (11.0%)	79 (5.6%)	4 (0.3%)	48 (3.4%)	13 (0.9%)	36 (2.5%)	93 (6.6%)	110 (7.8%)	15 (1.1%)

(5) 토론 진행방식 결정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사회자의 질문에 후보자 상호토론이 이어지는 혼합형식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토론회를 역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모든 시·도에서 주도권토론 방식을 적용하였다.

토론 진행방식은 기초연설 이후 사회자 공통질문(547회)을 기본방식으로 하고, 토론 중반에 후보자 공약발표와 질문(163회), 주도권토론(223회), 자유토론(8회) 등 후보자간 상호토론 형식이 사용되었다.

[표 2-19] 진행방식 사용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기초연설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개별질문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와 질문	후보자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주도권 토론	자유 토론	맺음말	기타
합계	1,633	243	547	65	68	33	163	42	223	8	222	19

(6) 토론회 개최 홍보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미디어 환경에 상응하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토론회 개최를 홍보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제공한 도안을 활용하여 전국 1,963개소에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신문(각급선거관리위원회)·잡지광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물 및 팸플릿에 ‘후보자 TV토론주간’의 내용을 삽입하는 등 지역별 잡지·신문광고 295회, 자막광고 41,675회 등의 홍보를 실시하였다.

[표 2-20] 홍보 현황

(단위 : 회)

계	현수막	자막광고	잡지·신문 등 광고	기타
50,926	1,963	41,675	295	6,993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슬로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중계방송사와 적극 협의하여 무대세트 도안 등에 활용한 결과, 후보자토론회 등 방송화면 표출 359회, 방송세트 표출 300회, 거리현수막 1,786회, 홍보 인쇄물 4,792회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다시보기 서비스 초기화면에도 표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중앙 및 지방 일간신문에 릴레이 기고를 하였다.

[표 2-21] 후보자토론회 관련 릴레이 기고 현황

언론사	기고자	주요 내용
매일신문(2016. 4. 1.)	이선우(대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토론회 시청은 선택 아닌 필수
중도일보(2016. 3. 28.)	이관형(대전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정책선거의 중심, 후보자 TV토론회
강원도민일보(2016. 3. 25.)	이희경(강원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선거의 꽃은 정책토론
전남일보(2016. 4. 1.)	임태호(전라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선거운동의 꽃 선거방송토론
경기신문(2016. 3. 30.)	진세혁(경기도 평택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유권자의 역할
울산매일(2016. 4. 6.)	이근용(울산시 울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선거방송토론 꼼꼼히 챙겨보기
한겨레(2016. 4. 7.)	권성욱(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무관)	후보 토론회, 끝까지 챙겨보자
서울매일(2016. 4. 4.)	문형주(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임)	후보자 선택, TV토론 보시고 결정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시청률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¹³⁾,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의 경우 6%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일부 선거구에서는 4~6%대를 상회하는 큰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7)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공직선거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2항에 따라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또는 자막방송을 실시하였다. 수어통역과 자막방송을 동시에 실시한 후보자토론회 등은 132회였으며, 자막방송의 시설 미비 등으로

¹³⁾ 시청률 조사는 국회의원선거의 특성상 조사기관 등에서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구·인천·대전·충북·전남·경북은 시청률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236회(64.2%)의 후보자토론회 등에서는 수어통역만 실시하였다.

[표 2-2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실시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수어통역	자막방송	수어·자막 동시실시	미실시
합계	368	236	-	132	-

(8)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인 2016년 3월 31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유권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웹을 통한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사이트를 구축하여, 전국 253개 선거구 후보자토론회의 영상 및 자막을 제공하였으며, 27개 관심 지역구의 후보자토론회는 네이버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특집페이지 및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사이트,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다시보기 서비스에 100만명 이상이 접속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3배 이상의 큰 효과를 거뒀다.

[표 2-23]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다시보기 사이트				네이버
		소계	인터넷	모바일		
				안드로이드	iOS	
접속자수 (비율)	1,199,379 (100%)	908,255 (75.73%)	90,462 (7.54%)	799,627 (66.67%)	18,166 (1.52%)	291,124 (24.27%)

※ 제19대 국선 : 347,982명, 제6회 지선 : 49,307명



[사진 2-10]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제 3 장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국민모니터링 운영
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워크숍
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회 및 세미나 개최
5.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발간

제 3 장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6년 2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분석' 연구용역 사업을 공모하였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저조한 시청률에 기인하는 연구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기초하는 기존의 접근법에서 탈피하여 온라인 조사업체가 제공한 3천여 명의 표본집단에서 무작위로 TV토론을 '시청한 집단'과 '시청하지 않은 집단'을 추출하여 두 표본집단의 차이를 분석하는 '실험연구 디자인'을 도입하였다. 이 연구는 TV토론의 시청이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 증대와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후보자의 토론 역량이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 투표선택, 친밀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TV토론의 시청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토론자 수가 적을수록 상승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가 향후 공직선거 후보자토론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국민모니터링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대

한 국민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¹⁴⁾ 국민모니터링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차수별 토론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7~10일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참여’를 통해 국민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개선의견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95명의 국민이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토론회 진행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 답하고, 그 밖에 다양한 개선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중요성 정도를 파악하고, 후보자토론회가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2016년 4월 1일~11일 국민참여 모니터링과 집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국민참여 모니터링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반 국민(유권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단 모니터링은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송종길 교수의 지도 아래 학부 및 대학원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모니터링단은 토론회에 관한 설문조사와 개선의견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국민모니터링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토론분야 및 주제는 대체로 적절하였다.
- 주제가 대부분 정치·경제·사회·복지에 집중되어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초청대상 정당을 대상으로 개최된 두 차례의 토론회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7일의 제2차 토론회가 보다 역동적이었다.
- 토론자들이 진행방식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토론회 시작 전에 이전 선거의 공약 이행 결과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시청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토론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에서처럼 참석 토론자 수가 많을 경우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는 성향이 비슷한 정당들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또한, 방송시간과 관련해서는, 많은 유권자가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방송시간대와 관련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토론회 진행에 있어서는, 경제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의 전문용어를 자막으로 설명하고, 진행 중인 주제는 바로 알 수 있도록 토론주제명을 TV화면 좌측 상단에 고정시켜 표출하는 등 유권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네이버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특집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실시간 댓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를 ‘다시보기’로

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메뉴 ‘국민참여>국민모니터링’에서 설문내용 확인 가능

차분하게 시청하기 어려우므로 영상재생 속도를 1.2배속, 1.4배속, 2배속 정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후보자토론회를 IPTV 등을 통해서도 다시보기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워크숍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평가를 위해 2016년 4월 29일 경기도 파주시 경기평화센터에서 ‘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과 사무국 직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찬태 KBS PD가 발제자로 참석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토론 실시 현황과 과제’를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발제자는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흥미있는 TV토론이 되려면 공동중계보다는 중계주관방송사의 단독중계를 전제로 하여 밤 시간대에 편성하는 방안, 정책토론과 후보자토론의 진행방식과 규칙을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토론회 관계자 및 토론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대선 토론회의 경우에는 가칭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흥미와 시청률을 제고하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참석자들은 후보자토론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을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사진 3-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워크숍

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회 및 세미나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6년 6월 15일~16일 충청북도 제천시 리솜포레스트에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사무국장과 간사 등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평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평가회는 후보자토론회의 관리에 대한 평가 및 토의,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회에 이어서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의뢰하여 진행 중이었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형식으로 한규섭 교수가 발제하고, 선거방송토론 방송관계자 및 학계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표 3-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요

구분	내용
개최일시	• 2016. 6. 16.(목), 10:00~12:00
개최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리솜포레스트 세미나(채송화)실
주 제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효과분석
발 제 자	•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 회 자	• 이효성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토 론 자	• 김찬태 (KBS PD,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 안종묵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이종희 (선거연수원 교수,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



[사진 3-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회 및 세미나

발제자의 효과분석 연구 발표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개최횟수가 많아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서울·경기·6대 광역시의 후보자토론회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폭넓게 진행하고자 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TV토론회가 단순히 시청으로 끝나지 않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내년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와 관련해서는 토론자 수에 대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일반전형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제 :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정책토론회 관리
민주시민토론회 운영
제도개선 연구
부 록

5.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발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 방송토론과 관련한 준비과정, 진행상황, 개최결과 등을 정리하여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를 발간하였다.¹⁵⁾ 본문은 ‘개관’, ‘후보자토론회의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후보자토론회 관리’,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관리’, ‘평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부록에는 ‘주요업무추진 연표’, ‘언론보도 현황’, ‘후보자토론회 등의 개최 현황’ 등을 수록하였다. 이 백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국회도서관, 사법·행정기관, 정당, 방송국 등 유관기관 등에 배부되었다.



[사진 3-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15)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debates.go.kr/>)에 PDF파일 게시

제 4 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1.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2.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홍보

제 4 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2016년 재·보궐선거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였다.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8곳, 광역의원선거 17곳, 기초의원선거 26곳 등 총 51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고, 이 중 기초자치단체장선거 8곳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경기 양주시·구리시, 충북 진천군, 전북 익산시, 경남 김해시·거창군 등 8곳의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 TV토론주간(2016. 3. 31.~4. 7.)에 총 15회의 후보자토론회를 모두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청대상에 포함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8회, 초청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연설회를 7회 개최하였다.

[표 4-1]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유형

(단위 : 회)

구분	계	토론				대담			연설			
		소개	초청	초청외	합동	소개	초청	초청외	소개	초청	초청외	합동
합계	15	8	8	-	-	-	-	-	7	-	7	-
대구	2	1	1	-	-	-	-	-	1	-	1	-
광주	1	1	1	-	-	-	-	-	-	-	-	-
경기	4	2	2	-	-	-	-	-	2	-	2	-
충북	2	1	1	-	-	-	-	-	1	-	1	-
전북	2	1	1	-	-	-	-	-	1	-	1	-
경남	4	2	2	-	-	-	-	-	2	-	2	-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은 지상파방송사(11회), 종합유선방송사(4회)를 통해 방송되었으며, 경기 지역에서만 종합유선방송사를 통해 2회 재방송된 사례가 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시간대(11:00~13:00) 1회, 오후시간대(13:00~19:00)가 7회, 저녁시간대(19:00~23:00) 5회, 심야시간대(23:00~25:00)는 2회 방송되었다.

[표 4-2]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중계방법 현황 (단위 : 회)

구분	중계방송									재방송			
	개회 횟수	주관방송사 단독중계방송				2개 이상 방송사 동시중계방송				재방송			
		소개	토론	대담	연설	소개	토론	대담	연설				
합계	15	13	7	-	6	2	1	-	1	2	1	-	1
대구	2	2	1	-	1	-	-	-	-	-	-	-	-
광주	1	1	1	-	-	-	-	-	-	-	-	-	-
경기	4	2	1	-	1	2	1	-	1	2	1	-	1
충북	2	2	1	-	1	-	-	-	-	-	-	-	-
전북	2	2	1	-	1	-	-	-	-	-	-	-	-
경남	4	4	2	-	2	-	-	-	-	-	-	-	-

총 8회 실시한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별 해당 후보자 수는 2명(5회) 또는 3명(3회)이었으며, 초청대상 후보자 전원이 참석하여 불참에 따른 제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회자는 학계, 중계방송사, 방송언론계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1인 연설회의 경우 사회자 없이 진행되었다. 토론주제는 경제 현안(15건), 지방자치 현안(7건), 교육(6건), 사회(5건), 문화(4건) 등 다양한 주제가 선정되었으며, 진행방식은 기초연설이후 공통질문(18회)을 기본방식으로 하고, 토론 중반에 후보자 보충질문(13회), 공약발표·질문(2회), 주도권토론행(9회), 자유토론(1회) 등 후보자간 상호토론 방식 등을 활용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와 연설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이 11회 이루어졌으며, 4회에 걸쳐 수어통역과 자막방송이 동시에 실시되었다.

[표 4-3]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분	선거구	대상	개회 구분	개최일시	방송일시	장소	중계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대구	달서구청장 보궐선거	초청	토론	4. 4.(월) 13:59~14:58	4. 4.(월) 13:59~14:58	KBS대구 스튜디오	KBS대구	권기준 (기자)	이태훈(새) 이유경(민)	-
			초청외	연설	4. 4.(월) 15:09~15:20				4. 4.(월) 15:09~15:20	이기주(무)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초청	토론	4. 3.(일) 13:15~14:30	4. 3.(일) 13:15~14:30	광주MBC 공개홀	광주MBC	윤근수 (기자)	홍진태(민) 김성환(국) 양혜령(무)	-

구분	선거구	대 상	개회 구분	개최일시	방송일시	장소	중계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경기	양주시장 재선거	초청	토론	4. 3.(일) 18:00~19:10	4. 6.(수) 19:00~20:10	의정부문화원 강당	씨앤엠 우리케이블TV CJ헬로비전 경기북부방송	소성규 (교수)	정동환(새)	-
		초청외	연설	4. 3.(일) 19:10~19:20	4. 6.(수) 20:10~20:20				이성호(민)	-
	구리시장 재선거	초청	토론	4. 4.(월) 10:30~12:00	4. 5.(화) 18:00~19:30	남양주시 1청사 다산홀	씨앤엠 경동케이블TV	장희영 (교수)	백경현(새)	-
		초청외	연설	4. 4.(월) 12:00~12:30	4. 5.(화) 19:30~19:40				김점숙(민)	-
충북	진천군수 재선거	초청	토론	4. 7.(목) 14:00~15:00	4. 7.(목) 14:00~15:00	KBS청주 공개홀	KBS청주	이해수 (아나운서)	김종필(새)	-
		초청외	연설	4. 7.(목) 10:00~10:50	4. 7.(목) 15:00~15:10				송기섭(민)	-
전북	익산시장 재선거	초청	토론	4. 7.(목) 14:00~15:40	4. 7.(목) 14:00~15:40	KBS전주 공개홀	KBS전주	함윤호 (아나운서)	최행식(새)	-
		초청외	연설	4. 7.(목) 15:40~15:50	4. 7.(목) 15:40~15:50				김은진(무)	-
경남	김해시장 재선거	초청	토론	4. 1.(금) 09:45~10:33	4. 1.(금) 09:45~10:33	MBC경남 창원홀	MBC경남	김성열 (교수)	김성우(새)	-
		초청외	연설	3. 31.(목) 10:00~11:00	4. 1.(금) 10:33~10:50				허성곤(민)	-
	거창군수 재선거	초청	토론	4. 1.(금) 23:40~00:40	4. 1.(금) 23:40~00:40	KBS창원 스튜디오	KBS창원	노병무 (아나운서)	이영철(무)	-
		초청외	연설	3. 31.(목) 14:00~15:00	4. 2.(토) 00:40~00:50				허점도(무)	-
								-	박권범(새)	-
								-	양동인(무)	-
								-	변현성(무)	-

2.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홍보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개최 사실을 자막광고 105회, 현수막 67개소 게시, 잡지·신문광고 5회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였다.

[표 4-4]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홍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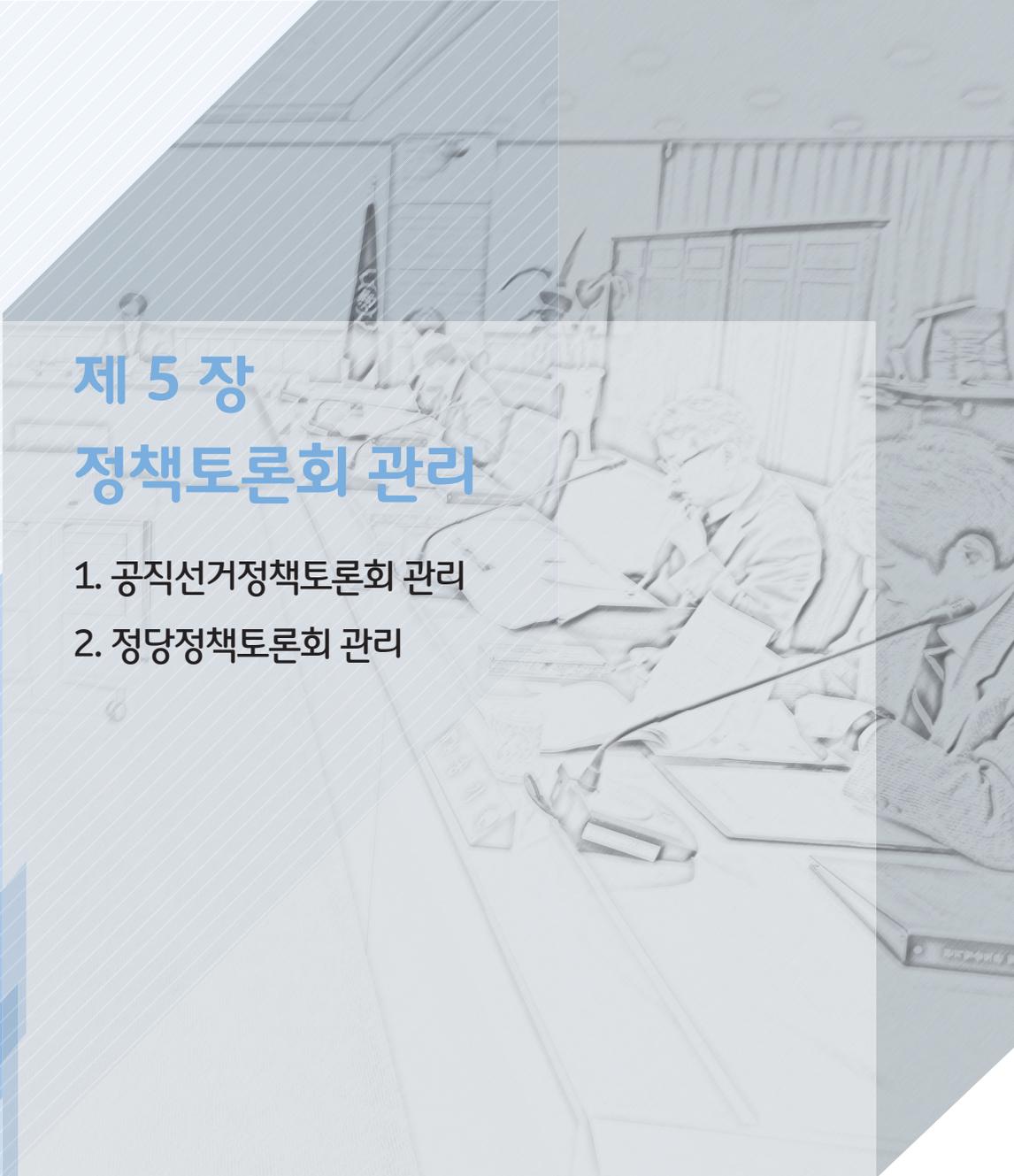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계	현수막	자막광고	잡지·신문 등 광고	기타
기초자치단체장	192	67	105	5	15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공동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슬로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의 시그니처(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홍보를 추진하여, 방송화면에 6회, 토론회 세트에 7회, 토론회 홍보 거리 현수막에 55회 표출되도록 하였다.

제 5 장 정책토론회 관리

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관리
2.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제 5 장

정책토론회 관리

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관리

1) 개최일시 · 장소 등 결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2016. 1. 14.)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2016. 3. 23.)까지의 기간 중 월 1회씩 총 3회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의 중계방송은 KBS와 MBC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TV¹⁶⁾를 통해서도 인터넷 생중계하였다.

[표 5-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구분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개최일시	2016. 1. 25.(월) 10:00~12:00(120분)	2016. 2. 26.(금) 10:00~12:00(120분)	2016. 3. 14.(월) 10:00~12:00(120분)
개최장소	MBC A 스튜디오	KBS TS-4 스튜디오	MBC A 스튜디오
토론분야	경제·노동	사회·복지	정치·선거 등
토론자(정당명)	권성동(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국회 환노위 간사) 박원석(정의당 국회 기재위 위원)	문정림(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연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관영(국민의당 디지털정당위원장) 김제남(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준석(새누리당 前 혁신위원장)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 김근식(국민의당 통일위원장) 나경채(정의당 공동대표)
사회자	김상철(MBC 논설위원)	김진석(KBS 보도위원)	신동호(MBC 국장)
질문자(패널)	전문가패널(김종진, 정철진)	-	사회자 질문(국민공모내용)
중계주관방송사	MBC	KBS	MBC
중계방송	KBS, MBC 동시생중계/ NEC-TV 중계		

16) NEC-TV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국임(<http://www.nec.go.kr>).

2) 초청대상 정당 선정

초청대상 정당은 국회 의석수와 직전선거의 득표율 등 참석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토론회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개 정당이 선정되었으며, 2016년 2월 5일 '국민의당'이 창당됨에 따라 제2차 토론회부터는 4개 정당이 선정되었다. 특히, 제3차 토론회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개최되는 만큼 각 정당의 정책을 책임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당대표 또는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토론자로 초청하기 위해 각 정당에 협조를 구했으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지연, 선거대책위원회 미구성, 정당의 후보자 공천문제 등 선거를 앞둔 각 정당의 복잡한 내·외부 사정으로 인해 당대표 및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토론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3) 소위원회 구성·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소위원회)에 따라 공식선거정책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의 작성과 검토를 위해 방송사, 학계, 법조계 추천 위원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준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표 5-2] 공식선거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명칭	운영 기간	구성 위원	직무
공식선거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2016. 1. 6. ~ 3. 4. (공식선거정책토론회 종료 시까지)	추형관, 허익범, 오미영, 송기원, 김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방식(안) 검토 토론주제(안) 검토 질문사항(안) 검토 사회자 검토

4) 사회자 등 선정

사회자는 각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준비소위원회에서 사회자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군을 압축한 후 전체 위원회의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사회자에게 미리 '진행매뉴얼'을 제공하고, 사회자가 질문사항 및 도입멘트 등을 직접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 사회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토론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제·노동 분야가 주제로 다루어지는 제1차 토론회는 심층적인 토론전개를 위해 해당 분야의 중립적인 전문가를 패널로 두기로 하였다. 분야별 전문가 후보군과 각 위원들의 추천 현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과 정철진 경제평론가를 최종 전문가 패널로 선정하였다.

5) 토론의제 수집 및 주제 결정

공식선거정책토론회는 차수별로 제1차 경제·노동, 제2차 사회·복지, 제3차 정치·선거로

구분하여 개최하기로 하였고, 각 정당, 각종 시민단체, 전문위원 등에게 추천을 의뢰하여 토론의제를 수집하였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하기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의 ‘국민제안’ 메뉴를 통해 주제 및 질문사항을 공모하는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제선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토론의제들을 토대로 전문 위원회의와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체 위원회의에서 토론주제와 질문사항을 선정하였다. 질문사항의 요지는 사전에 정당(토론자)에 통지하였다.

[표 5-3]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제 선정 현황

구분	분야	주제(질문요지)
제1차	경제·노동	한국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1주제 : 한국경제, 활로는?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난제 극복 방안) •제2주제 : 노동문제, 해법은?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제2차	사회·복지	각 당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은? •제1주제 : 복지예산(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해결 방안) •제2주제 : 사회양극화(사회양극화에 대한 각 당의 진단과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제3차	정치·선거	•제1주제 : 남북·외교 문제(남북관계에 대한 각 당의 진단과 대북정책의 방향) •제2주제 : 정치개혁(제19대 국회 평가)

6) 진행방식 결정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토론회 주제의 성격과 토론자 수를 고려하고, 공정성과 유용성 등에 대한 전문위원회의와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제1차 토론회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 → 토론자 간 자유 토론 → 전문가 패널의 보충질문 → 맺음말’의 순으로 진행방식을 결정하였다. 전문가 패널 2명에게 주제별로 질문과 토론자 답변을 포함하여 총 20분씩 할당하고, 주어진 시간의 범위 내에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별도로 정해놓지 않으며, 패널들이 자유롭게 보충질문을 하고 토론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론의 역동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제2차 토론회는 ‘사회자 공통질문 후 토론자 상호토론 → 주도권토론 → 맺음말’의 순으로 진행방식을 결정하였다. 토론회의 역동성을 높이고자 기존의 자유토론을 상호토론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도권토론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상대 토론자(다수 가능)를 지명하여 질문하도록 하였다. 1회 질문시간은 약 30초 정도, 답변시간은 최소한 30초 정도 보장하도록 하였다.

제3차 토론회는 ‘사회자 공통질문(국민공모내용) → 자유토론 → 주도권토론 → 맺음말’의 순서로 진행방식을 결정하였고,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자 질문에 국민질문공모 내용을 활용하였다. 주도권토론에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상대 토론자(최소 2개 정당 이상)를 지명하여 질문하도록 하고, 질문과 답변은 토론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1분 이내로 하도록 하였다.

7) 설명회 개최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차수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토론회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하고, 토론 주제 및 진행방식을 설명하였다. 또한, 토론회 당일 일정과 질서유지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별도의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이 진행방식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며, 토론회 규칙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표 5-4]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좌석추첨 결과
제 1 차	2016. 1. 18.(월)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새누리당:A, 더불어민주당:B, 정의당:C
제 2 차	2016. 2. 19.(금) 15:00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새누리당:A, 더불어민주당:D, 국민의당:C, 정의당:B
제 3 차	2016. 3. 9.(수) 15:00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새누리당:D, 더불어민주당:A, 국민의당:B, 정의당:C



[사진 5-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설명회

8) 토론회 개최 홍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제안공모를 실시하여 토론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토론회 개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관한 언론 보도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토론회 진행 중에 보도사진을 촬영하여 언론사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토론회 종료 후에도 보도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제1차 토론회에서는 KBS와 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 등에 117여회 보도되는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한편, 제2차 토론회부터는 토론회를 활용하여 공명선거를 홍보하고자 토론자용 물컵에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의 시그니처(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를 새겨 화면에 자주 노출되게 하였고, 방송제작진과 협의하여 주제 전환 장면과 클로징 화면에도 시그니처가 TV화면에 나타나게 하였으며, 사회자의 클로징 멘트를 통하여 슬로건을 홍보하였다.

9) 토론회장 설비

중계주관방송사의 스튜디오를 토론회의 개최장소로 이용하고, 세트설비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개최 전일에 토론회장을 설비하였다. 제1차 토론회는 사회자, 토론자, 패널의 좌석을 반원형으로 배치하였고, 제2차 및 제3차 토론회에서는 보다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자와 토론자가 마주보는 구조로 배치하였다. 토론자별 발언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토론시간관리시스템은 세트 전면에 설치하였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방송을 실시함에 따라 수어 통역 세트를 별도로 설비하였다.



[사진 5-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회장 설비(1~3차)



[사진 5-3]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회 원형 구조물 및 수어통역 세트

10) 토론회 진행

토론회 생방송 시작 1시간 전까지 토론자들이 방송국에 도착하도록 안내하였고, 토론회 당일토론회장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사전에 토론회에 참석하는 정당관계자 등에게 출입증을 배부하였으며, 중계주관방송사의 안전관리팀에 출입자 관리 등 질서유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중계주관방송사는 자유토론과 주도권토론순서에서 화면분할과 리액션 등 다양한 카메라 샷으로 역동적인 화면을 제공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실시하는 등 시청 편의를 제공하였다. 제1차 토론회를 통해 경제·노동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주요 정책을 알릴 수 있었고, 전문가 패널의 보충질문으로 다양한 논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패널의 보충질문은 개별질문과 공통질문이 고르게 활용되었고, 패널 간 질문의 횟수도 적절히 안배하여 운영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에서 하도록 토론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였으나, 토론자들의 답변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패널들이 준비했던 질문의 일부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질문이 어려워 심층적인 답변을 도출할 수는 없었다.

제2차 토론회의 경우 개최일 전일까지 계속된 야당 의원들의 국회 필리버스터 참여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인해 토론회 규칙을 숙지할 시간이 부족하여, 그 결과 토론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 듯하였다. 또한, 상호토론에서는 발언시간 초과 등 토론회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제3차 토론회에서는 사전에 토론회 진행방식 등을 토론자들에게 철저히 안내하였다. 국민제안을 통해 3개월 동안 수집한 국민질문공모 내용을 사회자 공통질문에 활용하였고, 시청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문요지 등을 자막으로 표출하였다.

토론자들은 감정적인 대립이나 상호비방 등 과도한 언쟁 없이 토론을 전개하였고, 자유토론에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주도권토론에서는 간략하고 적절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져 주도권토론의 장점인 긴박감을 살렸다.

11) 토론회 시청률

시청률 조사 전문기관 AGB(닐슨미디어리서치)가 전국을 기준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1차 토론회의 시청률은 3.8%(KBS 2.6%, MBC 1.2%), 제2차 토론회의 시청률은 3.0%(KBS 2.1%, MBC 0.9%), 제3차 토론회의 시청률은 3.4%(KBS 2.4%, MBC 1.0%)로 나타났다. 3차례 토론회 모두 SBS가 동시중계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하면 오전 10시대에 개최하였던 지난 토론회의 평균적인 시청률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2.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정당정책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법정 토론회로서, 2016년에는 선거가 없는 하반기에 총 2회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당정책토론회는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도 정당 간 정책토론회를 활성화하여 정책정당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법」에 도입되었고,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정책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인민생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제·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정책토론회 관리
 민주시민토론회 운영
 제도개선 연구
 부록

1)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연초에 정당정책토론회의 개최시기를 6~7월 중으로 계획하였으나, 전당대회 등 주요 정당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10차 위원회의(6. 10.)에서 제20대 국회(9월 정기국회) 출범 직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1부와 협의를 통해 9월 6일(화) 10:00 KBS 여의도 본관 TS-4 스튜디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고, 제11차 위원회의(8. 11.)에서 개최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였다.

[표 5-5]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구분	내 용
개최일시	2016. 9. 6.(화) 10:00~12:00(120분)
개최장소	KBS TS-4 스튜디오(여의도)
초청대상 정당	새누리당(김진태), 더불어민주당(박범계), 국민의당(이용호), 정의당(김종대)
토론분야	국정현안
토론주제	제20대 국회, 국정운영 방안은? - 외교·안보 정책(사드배치 문제 등)/검찰 개혁 방안
사회자	김진석(KBS 기자)
중계방송	KBS(주관방송사), MBC 동시생중계 ※ 국회방송 녹화중계(23:00~01:00)

(2) 토론자 선정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는 2016년 3/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을 초청대상 정당으로 선정하였다. 당초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위원장을 토론자로 초청하려 하였으나, 일부 정당에서 토론주제와 개최일시와 관련하여 적합한 토론자를 찾지 못해 토론자 선정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불참 정당 없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원내대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외교안보본부장)이 각 정당을 대표하여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표 5-6]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소속	직책	성명
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진태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범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용호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	김중대

(3) 위원회의 등 진행

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는 정책토론회 의사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해 위원회의 5회, 준비소위원회의 2회, 전문위원회의 1회 개최하였다. 특히, 일부 정당이 토론회에 불참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의에서 참석 토론자 수별 진행 방식을 사전에 결정하였고, 일부 정당의 토론주제 및 개최일시 변경 요청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 위원회의를 소집하기도 하였다.

토론의제 및 주제·진행방식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준비소위원회는 토론주제·진행방식, 사회자, 질문사항의 검토를 위해 상임위원을 포함한 공영방송사 추천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운영하였다.

[표 5-7]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운영 기간	구성 위원	직무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종료 시까지 (2016. 8. 11.~9. 6.)	추형관, 허익범, 오미영 송기원, 김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주제(안) 검토 진행방식(안) 검토 질문사항(안) 검토 사회자 검토



[사진 5-4] 전문위원회의



[사진 5-5] 준비소위원회의



[사진 5-6] 전체 위원회의

(4) 사회자 선정

위원 11인이 개별적으로 추천한 사회자 후보를 대상으로 준비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추천수가

높은 2인을 전체 위원회의에 상정하였고, 그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KBS 김진석 기사를 선정하였다.

자유토론이 강화된 진행방식에서 사회자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자를 사전에 준비소위원회(2016. 8. 31.)에 참석하도록 하여 사회자 문안 및 원활한 토론회 진행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토론회 규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회자에게 ‘진행 매뉴얼’을 제공·안내하였다. 또한, 토론회 대본 작성 시 사회자로부터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 등을 제출받는 등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자연스러운 토론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표 5-8]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현황

토론분야	성명	직업
국정현안	김진석	KBS 기자

(5) 토론주제 선정

정당, 기관·단체, 전문위원,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의제를 수집하고, 전문가 조사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에서 토론주제를 선정하였다.

제20대 국회 개원 후 개최하는 첫 정당정책토론회인 점을 감안하여 제목은 ‘제20대 국회, 국정 운영 방안은?’이라 정하고, 세부주제로 이슈가 되었던 ‘외교·안보 정책(사드배치 문제 등)’, ‘검찰 개혁 방안’을 선정하였다. 또한, 주제가 광범위하고 진행방식에 사회자 공통질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의 범위를 정해놓는 차원에서 토론자에게 세부논점을 제시하였다.

사회자가 제시하는 논점별 도입문안에 대한 사회자안과 사무국안을 준비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논의하여 전체 위원회의에 보고하였다.

[표 5-9]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주제 및 세부논점

구분	주제	세부 논점
제1주제	외교·안보 정책 (사드배치문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드배치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주요국과의 외교적 마찰 해소방안
제2주제	검찰 개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찰 개혁의 필요성 검찰 개혁의 방안

(6) 진행방식 결정

‘사회자 공통질문’을 생략하고, 개별 토론자에게 주어진 총 발언시간(총 23분) 내에서 세부 주제별 발언시간을 토론자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총량제’ 방식을 도입하였고, 진행방식은 토론자 기조연설, 자유토론, 맺음말 순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자가 주제별 세부논점을 제시한 후 자유토론을 실시하였고, 토론자별 시간총량(23분)의 범위 내에서 주제별로 토론시간(약 11분씩)을 대략적으로 정하여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일부 정당의 토론자는 제1주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14분 정도)하기도 하였으며, 주제별 토론 결과 시간적 여유가 있어 당초 1분으로 예정된 맺음말 시간을 2분으로 늘려서 진행하였다. 이번 자유토론에서는 토론논점 등을 제시하는 사회자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토론자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 졌으며, 토론의 역동성을 충분히 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7) 설명회 개최

2016년 9월 1일(목) 15: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청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토론자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으로 결정하였다. 추첨 결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의 순으로 결정되었고, 정당 관계자에게 토론회 진행방식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다.



[사진 5-7]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이후 토론회 개최 전에 의원실을 방문하여 토론자 및 그 보좌진들에게 토론회 주제, 진행방식, 토론회 당일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재차 안내하여 토론회에서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5-10]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비고
제1차	9. 1.(목) 15:00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201호)	토론회 좌석 및 발언순서 추첨

(8) 개최 홍보

일부 정당의 경우 토론자를 토론회 개최일 전일 오후에 결정하여 통보하였기에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늦게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지상파 방송 및 뉴스통신사 외의 언론사에서 토론회 개최를 안내하는 기사가 보도된 사례가 비교적 적었다. 하지만 토론회 개최 당일에도 토론회 리허설 사진 등을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토론회 현장 장면을 포함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9) 토론회장 및 부대시설 설비

토론회장은 사회자와 토론자가 마주보는 구조이고, 토론자 좌석 뒤 배경은 LED를 활용하여 설비하였으며, 수어통역 세트는 토론자 좌석과 별도로 배치하였다.



[사진 5-8]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회장 구조 및 수어통역 세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 로고와 슬로건(열린 토론 바른 선택)을 활용하여 토론자·사회자의 물컵과 세트 중앙의 원형구조물을 제작함으로써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5-9]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로고와 슬로건 활용

사회자용 프롬프터 1대 및 토론자용·전체화면용·수어전용 카메라 총 7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토론회 시간관리를 위해 토론시간관리시스템, 사회자 전용시계(리얼 타임)도 준비하였다.

주관 방송사인 KBS와 협의하여 토론자 분장실 및 대기실, 위원모니터실을 미리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방송사의 당일 녹화일정, 대기실 사용시간 중복 등의 이유로 토론자 개인 대기실을 확보할 수 없어서 2개 정당씩 공동으로 대기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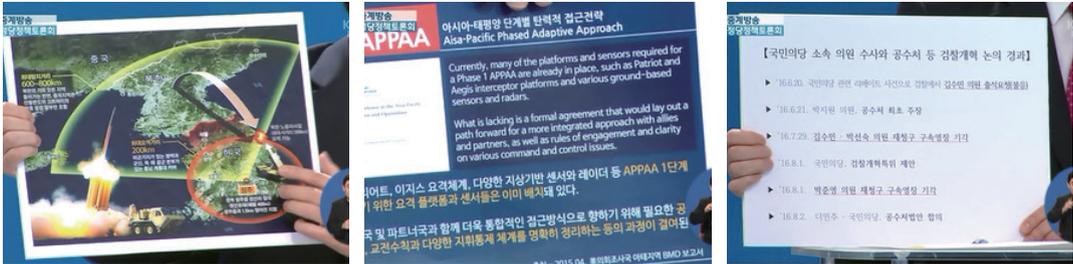
(10) 토론회 진행

토론회를 시작할 때 주제 선정 과정 등을 자막으로 설명하고, 토론자 성명 등 자막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를 활용하였다.



[사진 5-10] 주제 선정 과정 자막 표출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 활용

토론자가 토론회 진행 중에 사용하는 참고자료를 시청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리허설 시간에 카메라 감독에게 카메라의 위치, 각도와 방향 등을 맞추도록 안내하였으며, 리허설 후 사회자가 직접 토론자들에게 진행방식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여 토론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하였다.



[사진 5-11] 토론자의 참고자료 사용

토론자가 중심이 되어 자유롭게 토론이 이어졌고, 사회자가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논점을 정리하며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토론자의 1회 발언은 가급적 2분 이내에서 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제1주제가 종료된 후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토론자별 잔여시간을 상기시켜 주는 등 토론자들이 총 발언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제별 토론 후에 방송시간에 여유가 있어 맺음말 시간을 당초 1분에서 2분으로 늘려 토론을 마무리 하였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실시하였다.

(11) 시청률 현황

전국기준 시청률은 AGB 조사결과 2.7%, Tnms 조사결과 3.4%로 평일 오전 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부 정당들이 개최일 전일에서야 토론자를 결정·통보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언론사들이 개최사실을 기사화하지 못했던 점, 이로 인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적극적인 토론회 개최 홍보를 실시하지 못했던 점, 예년과 달리 SBS가 중계방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5-11]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조사기관	전국기준		
	KBS1	MBC	계
AGB(닐슨)	2.1	0.6	2.7
Tnms	2.3	1.1	3.4

2)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1) 개최 일시 · 장소 등 선정

MBC 시사제작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11월 10일(목) 10:00 상암동 MBC A 스튜디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후 제15차 위원회의(10. 12.)에서 개최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였다.

국회방송 방송기획팀과 협의하여 국회방송 채널에서도 토론회를 동시 생중계하였다. 국회방송은 개최일 당일 23:00에 다시 녹화방송하였다. 특히, 네이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과, MBC와 협의하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해 토론회를 생중계하였는데, 포털사이트를 통한 생방송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당정책토론회 사상 이번 토론회가 최초였다.

[표 5-12]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구분	내 용
개최일시	2016. 11. 10.(목) 10:00~12:00(120분)
개최장소	MBC A 스튜디오(마포구 상암동)
초청대상 정당	새누리당(최연혜), 더불어민주당(박용진), 국민의당(채이배), 정의당(윤소하)
토론분야	국정현안(경제·사회)
토론주제	국정현안 : 정국 수습방안 경제·사회 : 부동산 및 가계부채 대책, 노동문제(성과급제 등), 세법 개정
사회자	신동호(MBC 국장)
중계방송	MBC(주관방송사), KBS, 국회방송, NAVER 동시생중계

(2) 토론자 선정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초청 대상 정당은 2016년 4/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으로 결정되었다.

새누리당 미디어팀,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각 정당에 토론회의 개최일시, 주제 등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즉각 통지하고 안내하였다. 이와 함께 11월 1일까지 조기에 토론자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안내하고, 이후 유선으로도 제출기한을 지키도록 당부하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참석 승낙서 제출 기한을 토론회 개최 일 전 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토론자의 토론회 준비, 위원회의 토론회 홍보 등을 감안할 때 참석자를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책정당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정당의 정책 결정 책임자가 토론회에 나올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표 5-13】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소속	직책	성명
새누리당	최고위원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박용진
국민의당	제3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채이배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본부장	윤소하

(3) 위원회의 등 진행

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는 정책토론회 의사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해 위원회의 3회, 준비소위원회의 2회, 전문위원회의 1회 개최하였다.

일부 정당의 경우 11월 7일에 참석승낙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일 저녁에 토론자 변경을 통보했기 때문에, 토론회에 불참하는 정당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11월 8일 전체 위원회의에 ‘토론회 불참정당 발생 시 진행방식 결정안(제29호)’을 상정·검토하였다.

【표 5-14】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운영 기간	구성 위원	직무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종료 시까지 (2016. 10. 12.~11. 10.)	추형관, 허익범, 오미영 송기원, 김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주제(안) 검토 • 진행방식(안) 검토 • 질문사항(안) 검토 • 사회자 검토

(4) 사회자 선정

위원 11인이 각 1명의 사회자를 추천하였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추천수가 높은 2인을 전체 위원회의에 상정하였다. 이에 제16차 위원회의(10. 28.)에서 의결로 MBC 신동호 국장을 사회자로 선정하였다.

자유토론이 강화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에서 사회자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전회의를 개최(10. 31.)하여 사회자와 원활한 토론회 진행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사회자에게 미리 ‘진행 매뉴얼’을 제공·안내하였다. 또한, 사회자도 준비소위원회의(11. 2.)에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자

공통질문 문안을 검토하였으며, 토론회 진행과 관련한 의견교환을 통해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가 역동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표 5-15]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현황

토론분야	성명	직업
국정현안(경제·사회)	신동호	MBC 국장

(5) 토론주제 선정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정당, 기관·단체, 전문위원,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의제를 수집하고, 전문가 조사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 회의의 검토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에서 토론주제를 선정하였다.

10월 24일 준비소위원회에서는 토론회에서 다룰 '경제·사회 분야'의 세부주제로 '경제상황 진단 및 대책', '사회통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준비소위원회의 종료 후 이른바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10월 28일 개최한 위원회의에서는 시의성을 반영하여 '정국 수습방안'을 제1주제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2주제는 경제·사회 분야에서 '부동산 및 가계 부채 대책', '노동문제(성과급제 등)', '세법 개정' 세가지를 선정하였다.

[표 5-16]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분야 및 주제

구분	토론분야	토론주제
제1주제	국정현안	정국 수습방안
제2주제	경제·사회분야	부동산 및 가계부채 대책/노동문제(성과급제 등)/세법 개정

(6) 진행방식 결정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은 기초연설 없이 사회자 공통질문 후 토론자 간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토론자의 발언시간(총 24분) 내에서 주제별 발언시간의 조정이 가능한 '시간총량제' 방식을 도입하였다. 주제별로 사회자가 공통질문을 하고 토론자의 답변을 들은 후 자유토론으로 진행하였고, 토론자별 시간총량(24분)의 범위 내에서 주제별로 대략적인 토론시간(약 12분씩)을 정해놓고 운영하였다. 제2주제는 세가지의 소주제로 나누어 그 순서를 정하였으며, 토론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주제는 생략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7) 설명회 개최

11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청정당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토론자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하고,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준비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추첨 결과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의 순으로 결정되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설명회 개최일까지 토론자가 결정되지 않아, 토론자가 결정된 후 토론 팀장 및 담당직원이 의원실을 방문(11. 9.)하여 개별적으로 진행방식 등을 설명하였고, 정의당 토론자의 경우 요청에 따라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원활한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표 5-17]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비고
제2차	11. 3.(목) 15:00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614-1호)	토론회 좌석 및 발언순서 추첨



[사진 5-12]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8) 개최 홍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와 협조하여 토론회 개최 전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토론회 개최 당일에는 언론사에 보도사진을 제공하였다.

11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시국 집회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4개 정당이 한 자리에서 정국 수습방안을 토론했다는 점에서 토론회에 주요 언론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MBC는 11월 8일 방영된 100분토론 중계방송 중에 자막으로 정당정책토론회 개최사실을 안내하였고, 그 외 KBS, MBC, SBS, YTN 등 주요언론사에서도 토론회 개최 보도를 하였으며, 토론회 개최 이후에도 후속 보도를 하였다. 특히,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도 모바일·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토론회 중계를 홍보하였다.



[사진 5-13] 포털사이트(네이버)를 통한 개최 홍보

(9) 토론회장 설비 등

사회자와 토론자가 마주보는 구조로 좌석을 설비하였고, 사회자 뒷배경은 LED를 활용하여 설비 하였으며, 수어통역을 위한 세트는 토론자 좌석과 별도로 배치하였다. 카메라는 역동적인 화면 구성을 위해 토론자용, 전체화면용, 수어통역용으로 총 8대를 설치하였다. 또한, 토론회의 공정한 시간 관리를 위해 토론시간관리시스템과 사회자 전용시계(리얼 타임)를 준비하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 로고와 슬로건(열린 토론 바른 선택)을 활용하여 토론자·사회자의 물집과 세트 중앙의 원형구조물을 제작함으로써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MBC와 적극 협의하여 토론자 분장실, 토론자별 개별 대기실, 위원 모니터실을 확보하였다.



[사진 5-14]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회장 설비

(10) 토론 진행

주제 및 토론자 성명 등 안내 자막과 토론자용 물컵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를 활용하였다. 토론자가 중심이 되어 자유롭게 토론이 이어졌고, 사회자가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하며 자유토론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진행하였다. 토론자는 가급적 2분 이내에서 1회 발언하였고, 제1주제가 종료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사회자가 토론자별 잔여시간을 상기시켜 토론자들이 발언시간을 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맺음말 시간은 당초 1분에서 1분 40초로 늘려 토론을 마무리 하였다. 다만, 일부 토론자가 제2주제를 소주제별로 나누지 않고 포괄적으로 발언을 해서 토론회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기도 하였다.

제2주제의 세 번째 소주제 ‘세법 개정’은 방송시간이 부족하여 토론회에서 다루지 못했는데, 이는 토론시간이 부족할 경우 제3주제를 생략할 수 있음을 설명회 시, 토론회 직전 리허설 시 토론자에게 고지하였던 내용이었다.

화면구성은 토론자 개인별 바스트샷(Bust Shot, 가슴 위 화면), 웨이트샷(Waist Shot, 허리 위 화면)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부분적으로 풀샷(Full Shot, 인물 전체 화면), 화면분할을 이용하였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실시하였다.



[사진 5-15]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회 진행

(11) 시청률 현황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토론 주제로 선정하였으나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초청 정당 추천 토론자가 토론회 개최일전 3일에서야 결정되었기 때문에 보도자료 외에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토론회 방송시간이 평일 오전시간대이기도 해서 시청률은 비교적 높지 않았다. 시청률은 AGB기준 3.0%, Tnms 기준 3.1%이었고, 네이버를 통해 정당정책토론회를 시청한 국민은 UB(Unique Browser)기준 21,831명이었다. 향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각종 토론회를 포털사이트를 통해 계속 중계방송하여 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면 토론회 시청인구수가 가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표 5-18]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네이버 생방송 접속자 수

구분	PV(Page View)	UB(Unique Browser)	최대 동시 접속자 수
PC	8,874	7,749	625
모바일	17,748	14,082	343
계	26,622	21,831	968

[표 5-19]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조사기관	전국 기준		
	KBS1	MBC	계
AGB(닐슨)	2.1	0.9	3.0
Tnms	2.1	1.0	3.1

제 6 장 민주시민토론문화 육성

1.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대토론회 개최
2. 제12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3.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지원
4. 토론전문교육과정 운영
5.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6.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 '선거연설 및 TV방송토론' 과정 운영
7. 선거방송토론 토크콘서트 개최
8.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협력체제 구축

제 6 장

민주시민토론문화 육성

1.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대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6년 5월 12일(목)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유권자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5회 유권자의 날(5. 10.)을 기념하는 유권자대토론회는 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가 바라는 제20대 국회”라는 주제에 걸맞게 각 정당 국회의원 당선자, 학계 및 관훈클럽,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학생 등 각계각층을 초청하여 유권자와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오미영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새누리당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연당 손금주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한국정당학회 박명호 회장, 관훈클럽 박찬수 임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이라 중앙이사,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수상자 유용재 대학생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¹⁷⁾ 발제자로 나선 한국선거학회 이현우 회장은 발제문에서 “2주간의 선거운동기간 유권자의 손을 잡던 마음을 4년 내내 잊지 않는다면 성공한 국회의원이 될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 7명이 각 5~6분 정도 자유토론을 한 후, 일반 유권자와 소통하기 위해 청중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자 간 자유토론시간에 특별히 각 정당의 당선자들에게 추가 발언기회를 부여하였고, 이를 통해 제20대 국회에 임하는 자세, 다짐과 소명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과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대토론회는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 대한 희망을 논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17)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당선자를 초청하기로 하였으나, 당내 일정 등으로 인해 불참함.



[사진 6-1] 제5회 유권자의 날 유권자 대토론회

2. 제12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전국대학생토론대회는 2016년 8월 25일(목)~26일(금) 양일간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결선은 9월 3일(토) JTBC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녹화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대회를 주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BS·MBC·SBS·EBS·JTBC·KTV 등 방송사의 지속적인 후원에 이어 새롭게 후원기관·단체로 참여한 교육부, 대전MBC,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우송대학교 등 많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토론논제는 선거·정치 등 분야에서 일반인·대학생 등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후 토론논제 검증단의 수차례에 걸친 검증·추천 및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예선(준결승)과 본선(결승)으로 구분한 논제 2개를 선정하였으며, 대회 결과 토론논제의 찬·반 균형성은 대등하였다.

[표 6-1] 제12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토론 논제

구 분	토론 논제
예선(준결승)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본선(결승)	여론조사를 통한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은 배제해야 한다.

지난 대회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대회관리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처리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 또한, 참가자 접수와 등록 등 효율적인 대회관리를 위해 토론대회 관리시스템을 부분적으로 개선하여 대회 운영과 진행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참가자 접수결과, 전국 57개 대학교 150개팀(대학 연합팀 29개, 대기팀 22개 포함)이 참가신청을 하여 전년 대비 4개 대학교가 증가하였고, 권역별로는 충청권이 대폭 감소하고 수도권·경상권·

전라권이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대회 최초로 해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참가자가 있었다. 그러나 사전 불참신청기간을 두었음에도 대회 당일 12개 팀이 불참하여 최종적으로 116개 팀을 대상으로 토론대회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은 대회장별로 교수 심사위원 1명, 선거관리위원회 4~5급 1명, 6급 1명씩 총 3명으로 심사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교수심사위원 18명은 관련 학회의 협조로, 위원회 직원 35명은 토론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직원을 대상으로 위촉하였다. 심사위원에게는 사전에 교육자료를 송부하고 숙지토록 한 후 대회 당일 교육을 통해 심사위원별 임무 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대회장별 주의 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토론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투입함에 따라 심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시상식과 폐회식에는 참가자, 심사위원, 내·외빈, 후원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스틸사진을 상영하고, 축하공연을 진행하였으며, 동상 4개 팀·장려상 8개 팀·후원사특별상 9개 팀·스피커상 8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4강 진출팀에게는 준결승 진출권(판넬)을 수여하였다.



[사진 6-2] 제12대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현장

준·결승전은 TV방송 프로그램으로 기획·제작하여 JTBC방송사를 통해 녹화방송하였으며, 저명한 인사를 심사위원(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이효성 학회장, JTBC 신예리 보도제작국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추형관 상임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허익범 변호사,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등 5명)으로 구성하는 등 품격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국회방송(NATV)이 재방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TV는 인터넷방송을 하였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debates.go.kr/>)에도 대회영상을 게시하였다.



[사진 6-3] 제12대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결선

[표 6-2] 제12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구분	훈격	팀수	팀명	소속 대학	성명	
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	1팀	요란도란	연세대학교	박민영 정은비	
금상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위원장상	1팀	한얏	동국대학교	문상혁 도효진	
은상		2팀	막판	서강대학교	김기완 양수민	
			가온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호준	
동상		4팀	마파람	한양대학교	손솔빈 정상운	
			대화행	성균관대학교	이민형 한현철	
			도장깨기	고려대학교	이태환 박준형	
			청령결백	숭실대학교	정세진 전재만	
장려상		8팀	입신양명	성균관대학교	홍형석 함정민	
			법언	경희대학교	이다운 김동현	
			아이스아메리카노	고려대학교	이승현 안현혜	
			울림	고려대학교	김민주 천지훈	
			단발머리	서울대학교	이혜진	
				고려대학교	홍세미	
			싫다잘	경희대학교	안창원 전유진	
			메멘토모리	한동대학교	이한중 이주영	
		명지대학교	이학준 이지성			
후원사 특별상	대전광역시선관위원장상	1팀	책팻	성균관대학교	강현택	김예지
	선거연수원장상	1팀	양덕요정	한동대학교	신영희	손찬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상	2팀	아이돌	한양대학교	정승현	홍수진
			인텔리जू주	동아대학교	박현주	
		부산대학교	이영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상	1팀	에이스	경희대학교	한상유	이희민
	우송대학교 총장상	1팀	토론몬고	서울여자대학교	김예지	김가령
대전MBC 사장상	1팀	베리타스	국민대학교	신승제	송송이	

일반전형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권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제·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권리

정책토론회 권리

민주시민토론회 영상

제도개선 연구

부록

구분	훈격	팀수	팀명	소속 대학	성명	
후원사 특별상	한국리서치 사장상	1팀	주장	명지대학교	장은혜	백승주
	KT estate 사장상	1팀	교묘	송실대학교	박희원	김정수
스피커상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장상	8명	양덕요정	한동대학교	신영희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김건휘	
			소풍	서강대학교	이의진	
			얼라이브	서울여자대학교	박은지	
			갈매기	한양대학교	조원종	
			동고동락	고려대학교	이동환	
			아방가르드	서울대학교	배상윤	
			에이스	경희대학교	한상유	



[사진 6-4] 제12대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시상식 및 기념촬영

3.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지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1년도부터 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토론문화를 확산하고자 각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고등학생토론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고등학생토론대회는 각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6-3] 2016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현황

구분	일자	장소	토론논제	참가팀 수	비고
대구	2016. 7. 23.	경북대	민주시민교육 의무화 등 2개	32개	6회
인천	2016. 11. 6.	인천대	사전선거운동 허용, 선거권 연령 18세 조정 등 4개	32개	6회
광주	2016. 9. 8.	광주시의회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3개	32개	2회

한편, 사회 전반에 지역별 고등학생토론대회의 개최가 확산 추세에 있으므로 시·도별 예선 진행을 통한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의 개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 제6회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7월 23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에서 32개 팀 62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제6회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후원 방송사인 t-broad 대구방송이 녹화방송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영상을 촬영함으로써 향후 토론대회 시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마다 관내 고등학교로부터 대회 개최 전부터 토론대회와 관련한 문의가 들어오는 등 고등학생토론대회는 지역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은행, 경북대학교, 언론사 등의 후원에 힘입어 명실공히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토론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도 제5회 대회와 같이 참가팀으로부터 토론개요를 제출받아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을 선발함으로써 토론대회가 수준 높은 토론경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별 자체예선전을 통해 선발된 팀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팀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토론대회의 참여폭을 넓힘으로써 많은 학교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 수 있었다.

아울러, 조별예선전 후 16강에 진출하지 못한 팀에게도 그동안 준비한 논제에 대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스피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회 종료 시까지 모든 참가팀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대구토론교사지원단)과 내부 직원을 적정비율로 편성하였고, 16강전부터는 심사위원을 4인 이상으로 증원하였으며, 결승전에서는 지역 내 토론 전문가 및 기자 등의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위원들이 보다 더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선에 진출한 팀이 불참할 경우에는 다음 대회 참가를 제한함으로써 불참한 팀이 없도록 하였고, 전년도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여 복장 자율화, 토론주제 관련 자료 홈페이지 게시, 대기실 안내 등의 조치를 하였다. 적극적인 대인론 활동으로 언론보도 사례도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참가팀은 지난 대회보다 9개 팀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논제가 다소 어려웠던 것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 대회의 논제를 선정할 때에는 하나의 논제를 선정하여 부담을 줄이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논제는 시사성과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분야를 선정하는 등 난이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사진 6-5] 제6회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2) 제6회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토론대회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약, 대회 운영 등에 있어서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통해 6회째를 맞이하는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32개교 64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2016년 10월 29일(예선), 11월 6일(본선)에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개최되었으며, 토론대회 접수 신청 전에 토론논제를 결정·공표함으로써 공표된 주제에 보다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토론대회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예선대회 심사위원은 인천 고등학생 도덕윤리교과연구회 회원 교사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 및 행정주사 등을 3인 1조로 선정하였고, 본선대회는 대학 교수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토론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였다.

공중파 방송사 OBS경인TV와 함께 TV토론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을 기획·추진하여 고등학생 토론대회의 TV방송을 정례화하였다. 또한, 토론대회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론대회 개최 후에 방송프로그램 CD를 제작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배부함으로써 토론에 대한 고등학생의 관심을 제고하고 학교에서 방송프로그램이 자체 토론 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회가 6회째를 맞이하면서 교내 토론대회를 거쳐 토론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참여시키는 학교가 늘어나고, 참가 학생은 철저하게 토론준비를 함으로써 대회 인지도와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인천광역시고등학생토론대회는 학교와 학생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토론문화에 관심이 있는 많은 유권자들에게도 올바른 토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토론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6-6] 제6회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3) 제2회 빛고을(광주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8월 2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29개교 32팀 64명의 학생을 참가시켜 제2회 빛고을 고등학생토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토론대회 후원기관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유지하고, 각 기관 간 후원분야에 대한 상호협의과정을 통해 후원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지속적인 후원 유치에 성공하였다.

토론대회 관리분야, 교육분야를 포함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토론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참가학생들에게 토론의 기본 정의 등에 관한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토론 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토론의 질적 향상 및 대회의 내실화에 기여하였다. 정치분야보다 사회 분야 및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분야에서 논제를 선정하였고, 예선·본선·결선마다 토론논제를 달리하여 다양한 논제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였다.

예선에서는 참가팀을 총 8개조(1조당 4개팀)로 나누고, 팀당 총 2경기(찬·반 각 1경기)씩 리그전을 실시하여 1개조 2팀에게 16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진운에 따라 토론역량이 우수한 팀이 탈락하는 상황을 방지하였으며, 본선은 16강 토너먼트로 진행하였다. 본선 결과 결선에 진출할 2개 팀을 선발하였고, 결선은 kbc 광주방송에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였다.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예·본선에는 3인 심사제, 본선 4강에는 5인 심사제를 도입하여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결선은 방송과 연계하여 학계 등 전문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의 복합심사체제로 운영하였다. 전문심사위원 점수와 청중평가단 점수의 비율을 각 10%씩 상·하향 조정하여 심사 점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고, 결선 방송 시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¹⁸⁾ 지원사항 등을 사회자 멘트와 자막으로 안내하였다.

예선·본선 오프라인 대회와 결선 방송을 결합한 토론대회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참여 수준을 넘어 학교대항전 성격으로 발전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논제의 다양화와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 단체의 선거에 대하여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 모바일 환경에서 투표관리, 이용기관 관리자 대상 교육, 시스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kvoting.go.kr>)에서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대립토론의 정의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토론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토론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6-7] 제2회 빛고을(광주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4. 토론전문 교육과정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갈등관리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토론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6년 6월 2회에 걸쳐 토론전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였다. 예상을 넘는 참가신청으로 정원을 당초 30명에서 55명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원장 이해영 교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대행을 통해 양질의 강사를 지원받는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은 인문학을 토대로 한 토론의 역사와 고전 수사학을 중심으로 하여, 설득기법은 물론 토론의 유형·논제·전략과 관련된 체험과 토론행사의 직접적인 평가를 통한 다양한 실습을 통해 실천 심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특히, 토론행사 심사과정에서 필수적인 분야를 체험과정으로 편성하는 등 교육목적에 충실하도록 편성하였다.

강의 경험이 많은 대학교수(서울대 김종영, 서울대 박현희, 명지대 장혜영 교수)들을 강사로 지정하여 양질의 강의와 체험 실습을 제공한 결과,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반응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7년도 선거연수원 직무교육과정에 토론전문 교육과정을 정식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표 6-4] 토론전문 교육과정 시간표

시간 월일	09:00 ~ 10:30	10:30 ~ 10:50	11:00 ~ 11:50	12:00 ~ 13:0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6. 7.(화) / 6. 20.(월)	등록 (10:30까지) 및 과정안내		토론문화 활성화 추진방향 (김영철 중앙토론위 사무국장)	토론이란 무엇인가? (김종영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김종영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설득적 말하기의 요건 (김종영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설득적 말하기 실습과 평가 (김종영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6. 8.(수) / 6. 21.(화)	등록 (9:30까지)	토론의 유형 (박현희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부교수)	논제 설정 방법 (박현희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부교수)	점 심 식 사	토론 실습 I (박현희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부교수)		CEDA 토론의 구조와 전략 (박현희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부교수)		토론 실습 II (박현희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부교수)
6. 9.(금) / 6. 22.(수)	등록 (9:30까지)	토론실습 III (장혜영 명지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토론실습 IV (장혜영 명지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토론실습V (장혜영 명지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수료식		



[사진 6-8] 토론전문 교육과정

5.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선거와 토론체험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동안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1월과 7월에 서울 종로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각 3기, 기수별 20여명의 중·고등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1월에는 ‘토론체험과 멘토링→선거 투·개표 체험’의 순으로 1일 3시간씩 2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토론체험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7월에는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여 ‘외부강사 초청 강의→선거 투·개표 체험→전국대학생 토론대회 수상자와 함께하는 토론체험’의 순서로 1일 7시간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론 강의인 ‘토론의 이해와 방법’ 시간에는 현직 대학교 교수나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토론에

일반전형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권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제·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권리
정책토론회 권리
민주시민토론회 운영

제도개선 연구
부록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공부하고, 점심 식사 후 '선거 투·개표 체험' 시간에는 사전투표장비 및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여 투·개표 체험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참가 학생들이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나뉘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하였다. 특히, 토론체험 과정에서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수상자 2명이 각각 찬성팀과 반대팀의 멘토가 되어 토론의 준비, 주장과 논거의 구성 방법 등에 대하여 참가 학생들에게 멘토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방학 초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debates.go.kr>)나 한국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부포털(<http://www.teachforkorea.go.kr>)에서 교육프로그램 개설 여부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표 6-5] 2015~2016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요

구 분	2015 겨울방학	2016 여름방학
과정명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함께하는 토론체험과 멘토링	
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 2015. 1. 14.(목) 09:00~12:00 • 2기 : 2015. 1. 14.(목) 14:00~17:00 • 3기 : 2015. 1. 15.(금) 14: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 2016. 7. 27.(수) 09:00~16:00 • 2기 : 2016. 7. 28.(목) 09:00~16:00 • 3기 : 2016. 7. 29.(금) 09:00~16:00
장 소	선거연수원(종로구 소재) 5층 제2강의실 및 2층 선거체험실	
인 원	기수별 초·중·고등학생 20명, 총 60명	기수별 중·고등학생 20여명, 총 66명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체험과 멘토링 • 선거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사 초청 강의 • 선거투·개표 체험 • 멘토링을 통한 토론체험



[사진 6-9] 2015 겨울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사진 6-10] 2016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6.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 ‘선거연설 및 TV방송토론’ 과정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연수원과 협업하여 2016년 10월 27일 서울시 송파구 MBC아카데미에서 예비정치인(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34명을 대상으로 선거아카데미¹⁹⁾ ‘선거연설 및 TV방송토론’ 과정을 운영하였다.

선거방송토론의 사회자 경험이 있는 방송인을 ‘선거방송토론의 이해’ 과목의 강사로 선정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생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선거연설 및 선거방송토론 실습과정’에는 아나운서 경험이 있는 방송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예비정치인들에게 연설·토론 기법을 소개하고, 다양한 토론진행방식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실습과정에서는 참가자를 3개 반으로 나누어 참가자 모두가 기초연설, 자유토론, 상호토론, 주도권토론, 맺음말 등 토론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반에는 강사 1명, 카메라 운영자 2명, 토론시간관리시스템 운영자 1명, 사회자 1명 등 총 15명의 진행요원을 배치하였다.

전문 강사가 참가자의 잘못된 습관이나 단점을 분석·평가하여, 개선방법까지 알려주는 맞춤형 교육방식을 적용하여 호응 및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실습과정을 참가자별로 녹화해서 전문 강사의 평가와 함께 참가자도 자신이 발언하는 모습을 TV화면을 통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의내용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우 우수’ 또는 ‘우수’로 답변한 비율이 ‘선거방송토론 체험’은 85.3%, ‘선거연설의 이해와 체험’에 대하여는 73.5% 정도였다.



[사진 6-11]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 ‘선거연설 및 TV방송토론’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2016. 10. 25.~27. 예비정치인(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희망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던 프로그램으로서 선거실무, 정치관계법 주요 사례 소개 및 질의 응답, 선거연설 및 TV 방송토론 체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됨.

7. 선거방송토론 토크콘서트 개최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면, 선거의 꽃은 토론이다!”라는 모토 아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6년 12월 12일 (월) 대중 친화적 문화복합공간인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선거방송토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경직된 기존의 학술세미나 형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주주의에서 선거와 선거방송토론의 참된 가치, 성숙한 토론문화, 소통과 토론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및 사회 신뢰 증진 방향, 영화 속 선거 이야기 등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재정과·미디어과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행사 외부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본 행사는 대중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도록 ‘전설의 토론이 온다! 케네디는 닉슨을 어떻게 이겼나’라는 부제를 정해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전행사인 바이올린 연주에 이어, 1960년 제35대 미국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리처드 닉슨(공화당) 부통령과 존 F. 케네디(민주당) 상원 의원이 맞대결을 벌인 제1차 TV토론의 영상을 한국어 자막과 함께 약 60분 동안 상영하였다. 1960년 닉슨-케네디 TV토론은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후보자 TV토론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미디어 민주주의에서 정책토론의 범례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역사적인 의미와 더불어 우리나라 정치 토론의 현실을 성찰하는 측면에서도 흥미성과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 관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영상 상영에 이어 시작된 토크콘서트는 오동진 영화평론가가 사회를 맡고, 강제규 영화감독(태극기 휘날리며),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JTBC 비정상회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가 초대 손님으로 나와 1960년 닉슨-케네디 TV토론을 통해 살펴본 한국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시사점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중적으로 친숙한 인물과 주제에 대한 해박한 설명이 가능한 전문가를 초대 손님으로 섭외하여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충족시켰으며, 질의응답을 통한 관객과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열띤 소통의 장을 형성하기에 충분하였다.



[사진 6-12] 선거방송토론 토크콘서트
홍보 웹포스터



[사진 6-13] 선거방송토론 토크콘서트 개최

행사 홍보 및 모객을 위해 유관 기관 및 단체, 서울지역 대학의 정치학과·신문방송학과·사회학과 등 관련 학과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2016년 8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대학생 토론타대회 수상자들에게 유선 연락과 메일을 통하여 관람을 안내하는 등 젊은 세대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또한, 언론사를 통한 보도자료 이외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웹포스터를 게시하여 전국에 행사 개최를 알렸으며, 행사 1주일 전부터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로비에 X-배너를 설치하고, 대표소에 전단지지를 비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TV와 국회방송은 행사를 취재하고 뉴스방송을 통해 보도하였다. 인터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주현 사무국장은 2017년은 민주화 30년이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며, 선거방송토론이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6-14] NEC-TV 뉴스보도(NEC-TV 제공)



[사진 6-15] 국회방송 뉴스보도(국회방송 제공)

선거방송토론 토크콘서트는 기존 전문세미나의 정형화된 장소와 발제 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대중 친화적 복합문화공간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 국민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주주의에서 선거와 선거방송토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많은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선거방송토론 토크콘서트를 방송 영상으로 제작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유튜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널(<http://www.youtube.com/user/necpr>)에 게시하였다.

8.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협력체제 구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민주적 토론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효과적인 현장 중심의 토론문화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기초를 유지하고, 범사회적 협력체제의 구축과 확산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또한, 중앙과 시·도위원회 간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지속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도별로 자체 특화된 토론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하였다.

1) 대학생토론대회 등 지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6년 7월 7일(목)과 7월 11일(월)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인구보건협회가 주관한 제4회 전국대학생인구토론대회와 8월 8일(월)부터 10일(수), 13일(토) 한신대학교 등에서 오산시가 주관한 제2회 전국 학생 토론대회를 지원하였다. 양 대회에 후원기관 명칭 사용, 심사위원 지원, 위원장상 등을 지원하였다.

2) 전국 토론교육 페스티벌 지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6년 12월 3일(토) 경기도토론교육연구회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제3회 전국 토론교육 페스티벌을 지원하였다. ‘토론교육, 학교와 사회를 바꾸다’라는 주제를 모토로 토론을 통한 수업 개선 등 민주시민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들의 경험을 공유한 자리에서 ‘토론교육과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강연과 학생자치회임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강좌를 지원하였다. 이 행사는 토론수업 교사 등 국내 토론전문가들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민주적 의사소통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다같이 토론학교 운영 지원

부산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연계하여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고교생 40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토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토론역량의 함양에 기여하였다. 과정 중심의 연수로 구성하여 멘토링을 통해 토론능력 향상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냈다.



[사진 6-16] 다같이 토론학교 운영

4) 학생자치회임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지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2016년 11월 24일(목)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중학교 학생자치회임원선거에 최초로 후보자토론회를 도입하여 교내에 생중계하는 등 학교선거에서 성숙한 토론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에 후보자토론회의 도입을 희망하는 전국의 학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개최과정을 홍보영상²⁰⁾으로 제작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전파하였다.



[사진 6-17] 학생자치회임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5) 학생 토론대회 등 지원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6년 11월 18일(금)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스타트업캠퍼스 (START UP CAMPUS)에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일보가 주관한 제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와 12월

20) 5분 품 및 13분 품 각 1종 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debates.go.kr/>) 및 유튜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널(<http://www.youtube.com/user/necpr>)에서 시청 가능

일반전형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제·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정책토론회 관리
 민주시민토론회 영상

제도개선 연구
 부록

17일(토) 오산중학교에서 오산시가 주최한 관내 토론대회를 지원하였다. 토론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직원 등을 토론자문단(심사위원)으로 지원하고 토론대회 운영 노하우 등을 함께 지원하는 한편, 오산시 관내 토론대회를 시·도위원회에서 협력·지원하여 시·도 중심의 민주토론문화 활성화 촉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6) 민주시민 토론아카데미 운영 지원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6년 9월 3일(토) ~ 10월 2일(일) 고등학생 1·2학년 36명을 대상으로 특화사업인 민주시민 토론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전라북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토론교육 프로그램(토론 멘토링 실시 및 고등학생 토론대회 개최)을 진행하는 등 지역 내 체계적인 토론교육과 토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투표를 활용한 토론심사시스템을 도입하고, 블로그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기획 다큐멘터리 방송을 제작·방영하였다.



[사진 6-18] 민주시민 토론아카데미

7) 소통·공감의 학생 토론마당 개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2016년 5월 28일(월) 제주시, 6월23일(목) ~ 24일(금) 서귀포시 미래유권자를 대상으로 소통·공감의 학생 토론마당을 주최·주관하고 운영관련 지식 등을 지원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열린 토론교육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사진 6-19] 소통 · 공감의 학생 토론마당

8) 국내외 토론전문가들과 교류협력 추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사, 전문가 등 토론강의와 수업 경험이 풍부한 자원을 중심으로 국내 토론전문가 풀을 구성하였으며, 국제 토론대회 주최기관인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토론협의회(AIDA)와의 협력과 세계고등학생토론대회협의회(WSDC)가 주최하는 세계고등학생토론대회 유치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 7 장 제도개선 연구

1.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2. 선거방송토론 연구반 운영

제 7 장

제도개선 연구

1.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우리나라의 후보자 TV토론은 심층성과 역동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공식선거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고, 대선후보 TV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에 의뢰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학계와 TV토론회·선거방송과 관련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심층적인 인터뷰를 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의 개최장소, 토론의제, 사회자, 진행방식, 유권자 참여 방안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과 유권자의 TV토론회 시청 접근성 강화 방안, TV토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토론 연구반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며,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한 유권자의 접근성 강화 및 TV토론회의 역동성, 흥미성, 유용성 제고 방안 등 주요 검토내용은 내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TV토론회를 준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선거방송토론 연구반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면적이고 역동적인 정치 환경에 부합하는 선거방송토론제도를 마련하고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전국 규모의 토론대회 개최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2016년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연구반을 운영하였다. 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는 조직체계 정비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을 총괄 담당으로 하여 총 2개 반을 편성하고, 각 반의 팀장은 선거방송토론 유경험자 및 전문가로서 구·시·군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선정하였으며, 반원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담당 직원과 서울시·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직원으로 구성하였다.

[표 7-1] 선거방송토론 연구반 편성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연구분야 (간사)
1반	팀장	인천	서구	5급	이용용	선거방송토론 법·제도 개선 (간사 : 방송토론팀장 최영돈)
	반원	중앙	중앙토론투	6급	강무형 김준오	
	반원	중앙	중앙토론투	다급	오지양	
	반원	경기	평택시	6급	김혜란	
2반	팀장	경기	광명시	5급	박종연	민주토론문화 확산 방안 (간사 : 토론지원팀장 심현화)
	반원	중앙	중앙토론투	다급	권성욱	
	반원	서울	은평구	6급	김소현	
	반원	중앙	중앙토론투	7급	이제중	

※ 소속과 직급은 2016. 12. 31. 현재 기준

이번 연구반의 연구 분야는 ‘선거방송토론 법·제도 개선’과 ‘민주토론문화 확산’ 방안이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표 7-2]와 같다.

[표 7-2] 주요 연구과제

연구 분야	연구 내용
선거방송토론 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선거법, 정당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후보자토론회 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사무편람 개정안 및 주요 과제 검토의견 마련
민주토론문화 확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유권자대상 토론타대 확대방안 논의 및 전국 고등학생토론타대 기본계획안, 고등학생토론타대 운영규정안, 토론타대 운영 매뉴얼안 마련 교육기부 프로그램 확대 방안 논의 및 2017 교육기부 프로그램 기본계획안 마련

제 8 장 부 록

1. 2016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표
2. 2016 토론회 토론진행표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후보자토론회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2016 정당정책토론회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련 법규

제 8 장 부 록

1. 2016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표

2015년

12. 30. ~ 16. 3. 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국민제안공모 실시
- 토론분야별 토론주제 및 질문사항

2016년

1.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추형관 부임
1. 6. 제1차 위원회의
1. 11. 제2차 위원회의
1. 14. ~ 1. 15. 2015 겨울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선거연수원)
1. 19.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개정
1. 19.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 배부
1. 20. ~ 1. 29. 선거방송 TV토론 강화' 운영(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대상)
- 수도권(서울MBC아카데미, 1. 20.), 호남권(광주MBC스튜디오, 1. 25.)
영남권(대구MBC스튜디오, 1. 26.), 충청권(대전MBC스튜디오, 1. 29.)
1. 21. 제3차 위원회의
1. 25.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경제·노동 분야)
1. 25. ~ 2. 3.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국민모니터링 실시
2.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방송토론 사무관리 자료집』 배부
2. 13. ~ 4. 1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TV토론회 상황근무반 편성·운영
2. 15. ~ 2. 19. '홍보·방송토론실무과정' 직무교육 실시(선거연수원)
2. 16. 후보자 등 지지율 여론조사 수집대상 언론기관 현황 통지
2. 18. 제4차 위원회의
2. 24. 제5차 위원회의
2. 25.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TV토론주간' 지정 및 운영에 따른 협조 요청(공영방송사)
- '후보자 TV토론주간' 집중 방영 및 방영시간 협의

2. 26.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사회·복지 분야)
2. 26.~3. 6.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국민모니터링 실시
3. 1.~3. 30.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토론회 초청 정당·후보자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공표 자료수집
3. 7.	제6차 위원회의
3. 7.~6. 30.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용역(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3. 11.	제7차 위원회의
3. 14.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후보자토론회 홍보 현수막 도안 제공
3. 14.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정치·선거 분야)
3. 14.~3. 23.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국민모니터링 실시
3. 15.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회의 개최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입장 발표
3. 18.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임기만료(이정희)
3. 2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해촉(양정숙)
3. 2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위촉(최은수, 오미영, 강신업)
3. 24.~3. 25.	후보자등록기간
3. 3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위촉(정연정)
3. 25.	제8차 위원회의
3. 25.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호선(최은수)
3. 30.~4. 4.	재외투표기간
3. 31.	제9차 위원회의
3. 31.~4. 12.	선거운동기간
3. 31.~4. 7.	'후보자 TV토론주간' 운영 및 후보자 TV토론회 관리
3. 31.~4. 13.	후보자TV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실시
4. 4.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 1차, MBC 스튜디오)
4. 6.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해촉(정연정)
4. 6.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위촉(정병운)
4. 6.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 외, MBC 공개홀)
4. 7.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 2차, KBS 스튜디오)
4. 4.~4. 1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모니터링 실시
4. 8.~9.	사전투표기간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
4. 29.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평가 위원워크숍 개최
5. 12.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개최(한국프레스센터)
5. 28.	2016 소통과 공감의 제주시학생 토론타당 후원(남광초등학교)
6. 7.~6. 9.	토론전문교육과정 1기 운영(선거연수원)
6. 7.~11. 15.	'제19대 대선후보 TV토론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
6. 10.	제10차 위원회의

일반연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제·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정책토론회 관리

민주시민토론회 운영

제도개선 연구

부록

6. 12. 제3회 청소년통일공감대토론회 개최 지원(이화여자대학교)
6. 20.~6. 22. 토론전문교육과정 2기 운영(선거연수원)
6. 15.~6. 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회 및 세미나 개최
6. 23.~6. 24. 2016 서귀포시 학생토론대회 후원(서귀포학생문화원)
6. 27. 전문위원 해촉(현경보)
7.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이주현 부임
7. 5.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배부
7. 22.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매뉴얼 보급
7. 23. 제6회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경북대학교)
7. 27.~7. 29. 2016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선거연수원)
8. 8.~8. 10., 13. 제2회 오산시 전국학생토론대회 후원(한신대학교, 오산중학교)
8. 11. 제11차 위원회의
8. 12. 전문위원 위촉(김익상, 김혜영)
8. 25.~8. 26. 제12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예·본선 개최(KT대전인재개발원)
8. 27. 제2회 빛고을 고등학생토론대회 예·본선 개최(광주광역시의회)
8. 29. 제12차 위원회의
9. 2. 제13차 위원회의
9. 2. 제14차 위원회의
9. 3. 제12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결선 개최(JTBC 스튜디오)
9. 6.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KBS 스튜디오)
9. 8. 제2회 빛고을 고등학생토론대회 결선 개최(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10. 12. 제15차 위원회의
10. 2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위촉(송기원)
10. 27.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 '선거연설 및 TV방송토론' 강좌 운영(MBC아카데미)
10. 28. 제16차 위원회의
10. 29. 제6회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예선 개최(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11. 6. 제6회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본선 개최(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11. 8. 제17차 위원회의
11. 10.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MBC 스튜디오)
11. 24. 청라중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지원(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중학교)
12. 3. 2016 전국 토론교육 페스티벌 후원(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부천중흥초등학교)
12. 12. 선거방송토론 토크콘서트 개최(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12. 14. 제18차 위원회의

2017년

1.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남택용 부임

2. 2016 토론회 토론진행표

1) 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후보자토론회 토론진행표

(1) 제1차 초청대상 정당 비례대표후보자토론회

□ 일 시 : 2016. 4. 4.(월) 10:00~12:00(120분)

□ 장 소 : MBC B 스튜디오

순번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30초	10:01:30	MC/ S/T	신동호 (MBC 국장)		
3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선정 과정 및 진행방식 설명	30초	10:02:00				
4	사회자 공통질문 후 토론자 답변	[각당의 '경제' 대표 공약]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조성주/최운열/김종석/채이배 토론자 답변(각 1분30초)	8분 (6분30초)	10:10:00			A : 조성주 (정의당) B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C : 김종석 (새누리당) D : 채이배 (국민의당)	
5	토론자 자유토론 I	[주제1 : 경기 침체 극복 방안] ☞ 사회자 Bridge • 최운열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각 5분)	23분 (20분)	10:33:00				
6	토론자 자유토론 II	[주제2 : 일자리 대책] ☞ 사회자 Bridge • 김종석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각 5분)	23분 (20분)	10:56:00				
7	토론자 자유토론 III	[주제3 : 저출산·보육 정책] ☞ 사회자 Bridge • 채이배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각 5분)	23분 (20분)	11:19:00				
8	주도권 토론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조성주/최운열/김종석/채이배 토론자 주도권 토론(각 7분) - 가급적 질문·답변 1분 이내 - 최소 2개 정당 이상에게 질문	31분 (28분) 31분 (28분)	11:50:00				수어 MIX
9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최운열/김종석/채이배/조성주 토론자 맺음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토론자의 발언시간이나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5분 (4분)	11:55:00				
10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11:56:00				S/T F.S
11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6:10			VCR	

(2) 제2차 초청대상 정당 비례대표후보자토론회

□ 일 시 : 2016. 4. 7.(목) 10:00~12:00(120분)

□ 장 소 : KBS TS-4 스튜디오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30초	10:01:30	MC/ S/T	백운기 (KBS 해설위원)	
3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및 진행방식 설명	30초	10:02:00			
4	사회자 공동질문 후 토론자 답변	[각 당의 '정치' 대표 공약]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이상돈/유민봉/김종대/이철희 토론자 답변(각 1분30초)	8분 (6분30초)	10:10:00			〈토론자〉 A : 이상돈 (국민의당) B : 유민봉 (새누리당) C : 김종대 (정의당) D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5	토론자 자유토론 I	[주제1 : 정치 쇄신 방안] ☞ 사회자 Bridge • 유민봉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각 5분)	23분 (20분)	10:33:00			
6	토론자 자유토론 II	[주제2 : 남북·외교 문제] ☞ 사회자 Bridge • 김종대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각 5분)	23분 (20분)	10:56:00			
7	토론자 자유토론 III	[주제3 :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 ☞ 사회자 Bridge • 이철희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토론(각 5분)	23분 (20분)	11:19:00			
8	주도권 토론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이상돈/유민봉/김종대/이철희 토론자 주도권 토론(각 7분) - 가급적 질문·답변 1분 이내 - 최소 2개 정당 이상에게 질문	31분 (28분)	11:50:00		수어 MIX	
9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유민봉/김종대/이철희/이상돈 토론자 맺음말(각 1분) ※ 시간이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5분 (4분)	11:55:00			
10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30초	11:56:30		S/T F.S	
11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6:40		VCR	

(3)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당 비례대표후보자토론회 토론진행표

□ 일 시 : 2016. 4. 6.(수) 14:00~16:00(120분)

□ 장 소 : MBC 공개홀 스튜디오

순번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4분	14:04:00	MC/ S/T	사회자 : 신동호 (MBC 국장)
3	진행방식 설명	- 진행방식 설명	30초	14:04:30		
4	기조연설	☞ 사회자 Bridge • 기조연설(각 2분) ☆ 신지예 → 김선동 → 옹혜인 → 김민석 → 김경세 → 김용균 → 박두식 → 이상구 → 박세준 → 황정애 → 류승구 → 고영일 → 김재근 → 김만근 → 최인식 → 이대마	36분 (32분)	14:40:30		
5	사회자 공통질문 후 토론자 답변	[주제 : 각 당의 대표 공약]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후 토론자 답변 (각 3분) ☆ 김선동 → 옹혜인 → 김민석 → 김경세 → 김용균 → 박두식 → 이상구 → 박세준 → 황정애 → 류승구 → 고영일 → 김재근 → 김만근 → 최인식 → 이대마 → 신지예	55분 (48분 30초)	15:35:30	수어 MIX	
6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맺음말(각 1분) ☆ 옹혜인 → 김민석 → 김경세 → 김용균 → 박두식 → 이상구 → 박세준 → 황정애 → 류승구 → 고영일 → 김재근 → 김만근 → 최인식 → 이대마 → 신지예 → 김선동 ※ 시간이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20분 (16분)	15:55:30		
7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 위원 등 소개(자막)	1분	15:56:30		
8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5:56:40		

일반전형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권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제 · 보결선거
후보자토론회 권리

정책토론회 권리

민주시민토론회 권역
육성

제도개선 연구

부
록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행행표

(1)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행행표

□ 일 시 : 2016. 1. 25.(월) 10:00~12:00(120분)

□ 장소 : MBC A 스튜디오

순번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패널 소개	1분30초	10:01:30	MC/ S/T	김상철 (MBC 논설위원)	
3	주제·진행 방식 설명	“한국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주제·진행방식 설명	30초	10:02:00			
4	사회자 공동질문 후 토론자 자유토론 I	[주제 1 : 한국경제, 활로는?]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권성동/이인영/박원석 의원 답변(각 2분 정도)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7분 정도 • 이인영 의원부터 발언 → (자유토론)	8분 (6분30초) 24분 (21분)	10:10:00 10:34:00			MC/ S/T
5	전문가패널 질문·답변 VCR	☞ 사회자 Bridge • 패널 질문과 토론자 답변(총 20분) : 가급적 패널질문 30초, 토론자 답변 1분 정도	23분 (20분)	10:57:00	B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6	사회자 공동질문 후 토론자 자유토론 II	[주제 2 : 노동문제, 해법은?]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박원석/권성동/이인영 의원 답변(각 2분 정도)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7분 정도 • 권성동 의원부터 발언 → (자유토론)	8분 (6분30초) 24분 (21분)	11:05:00 11:29:00	MC/ S/T	C 박원석 (정의당) 〈패널〉 1. 김종진 (한국노동 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 정철진 (경제평론가)	
7	전문가패널 질문·답변 II	☞ 사회자 Bridge • 패널 질문과 토론자 답변(총 20분) : 가급적 패널질문 30초, 토론자 답변 1분 정도	23분 (20분)	11:52:00			
8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이인영/박원석/권성동 의원 맺음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토론자의 발언시간이나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4분 (3분)	11:56:00			MC/ S/T
9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11:57:00	S/T F.S	위원 등 소개 (자막)	
10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7:10	VCR		

(2)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 일 시 : 2016. 2. 26.(금) 10:00~12:00(120분)

□ 장소 : KBS TS-4 스튜디오

순번	항목	내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10:01:00	MC/ S/T	김진석 (KBS 보도위원)
3	주제·진행 방식 설명	“ 각 당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은? ” - 주제 선정 과정 및 진행방식 설명	1분	10:02:00		
4	사회자 공동질문 후 토론자 상호토론 I	[제1주제 : 복지예산]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문정림/김제남/김관영/이언주 의원 답변 후 자유롭게 상호토론(토론자당 총 7분)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10분 (8분30초)	10:12:00	MC/ S/T	
			23분 (20분)	10:35:00		
5	주도권 토론 I	☞ 사회자 Bridge • 김제남/김관영/이언주/문정림 의원 주도권 토론(각 6분) - 가급적 질문 30초 정도, 토론자 답변 30초 보장 - 최소 2개 정당 이상에게 질문	26분 (24분)	11:01:00		<토론자> A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6	사회자 공동질문 후 토론자 상호토론 II	[제2주제 : 사회양극화]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김관영/이언주/문정림/김제남 의원 답변 후 자유롭게 상호토론(토론자당 총 5분)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10분 (8분30초)	11:11:00	MC/ S/T	B 김제남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 C 김관영 (국민의당 디지털정당 위원장) D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4분 (12분)	11:25:00		
7	주도권 토론 II	☞ 사회자 Bridge • 이언주/문정림/김제남/김관영 의원 주도권 토론(각 6분) - 가급적 질문 30초 정도, 토론자 답변 30초 보장 - 최소 2개 정당 이상에게 질문	26분 (24분)	11:51:00		
8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문정림/김제남/김관영/이언주 의원 맺음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토론자의 발언시간이나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5분 (4분)	11:56:00	MC/ S/T	
9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11:57:00	S/T F.S	위원 등 소개 (자막)
10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7:10	VCR	

일반연행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권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제1·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권리

정책토론회 권리

민주시민토론회 문화·여성

제도개선 연구

부록



(3)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 일 시 : 2016. 3. 14.(월) 10:00~12:00(120분)

□ 장 소 : MBC A 스튜디오

순번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10:01:00	MC/ S/T	신 동 호 (MBC 국장)
3	주제· 진행 방식 설명	- 주제 선정 과정 및 진행방식 설명	1분	10:02:00		
4	사회자 (국민공모내용) 질문 후 토론자 자유토론 I	[제1주제: 남북·외교 문제]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이철희/김근식/나경채/이준석 토론자 답변 이후 자유토론(각 6분) ☞ MC 논점(국민제안공모 내용 등) 및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9분30초 (8분30초)	10:11:30		
			19분 (16분)	10:30:30		
5	주도권 토론 I	☞ 사회자 Bridge • 김근식/나경채/이준석/이철희 토론자 주도권 토론(각 6분) - 가급적 질문·답변 1분 이내 - 최소 2개 정당 이상에게 질문	26분 (24분)	10:56:30		A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본부장
6	사회자 (국민공모내용) 질문 후 토론자 자유토론 II	[제2주제: 정치개혁]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나경채/이준석/이철희/김근식 토론자 답변 이후 자유토론(각 6분) ☞ MC 논점(국민제안공모 내용 등) 및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9분30초 (8분30초)	11:06:00		B :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회 위원장
			19분 (16분)	11:25:00		
7	주도권 토론 II	☞ 사회자 Bridge • 이준석/이철희/김근식/나경채 토론자 주도권 토론(각 6분) - 가급적 질문·답변 1분 이내 - 최소 2개 정당 이상에게 질문	26분 (24분)	11:51:00		C :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
8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이철희/김근식/나경채/이준석 토론자 맺음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토론자의 발언시간이나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5분 (4분)	11:56:00		D : 이준석 새누리당 (전)혁신 위원장
9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11:57:00		S/T F.S
10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7:10	VCR	

3) 2016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1)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 일시 : 2016. 9. 6.(화) 10:00~12:00(120분 생방송)

□ 장소 : KBS TS-4 스튜디오

순번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10:01:00		김진석 (KBS 기자)
3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소개 - 진행방식 소개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23분	1분	10:02:00		
4	기조연설	[제목 : 제20대 국회, 국정운영 방안은?] ☞ 사회자 Bridge • 김진태 → 이용호 → 김종대 → 박범계 의원 (각 1분 정도)	7분 (4분)	10:09:00	MC/ S/T	A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간사)
5	토론자 자유토론 I	[제1주제 : 외교·안보 정책(사드배치 문제 등)]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토론자당 약 11분 정도 • 사회자 논점 제시 등 코멘트 : 사드배치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주요국과의 외교적 마찰 해소방안 • 이용호 의원부터 발언 → (자유토론)	50분 (44분)	10:59:00		B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6	토론자 자유토론 II	[제2주제 : 검찰 개혁 방안]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토론자당 약 11분 정도 • 사회자 논점 제시 등 코멘트 : 검찰 개혁의 필요성 / 검찰 개혁의 방안 • 김종대 의원부터 발언 → (자유토론)	50분 (44분)	11:49:00		C 김종대 (정의당 외교안 보본부장)
7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박범계 → 김진태 → 이용호 → 김종대 의원 (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6분 (4분)	11:55:00	수어 MIX	D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간사)
8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11:56:00	S/T F.S	위원 등 소개 (자막)
9	타이틀	엔딩 타이틀	30초	11:56:30	VCR	

일반연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권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제·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권리

정책토론회 권리

민주시민토론회 및
방송

제도개선 연구

부록

(2)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 일시 : 2016. 11. 10.(목) 10:00~12:00(120분 생방송)

□ 장소 : MBC A 스튜디오

순번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10:01:00	MC/ S/T	
3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소개 - 진행방식 소개 : 1인 총 발언시간 24분	1분	10:02:00	MC/ S/T	
4	사회자 공통질문 후 자유토론 I	[제1주제: 국정현안] • 정국 수습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최연혜/채이배/윤소하/박용진 토론자 답변 후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토론자당 약 12분 정도 ☞ 사회자 Bridge	54분 (48분30초)	10:56:00		
5	사회자 공통질문 후 자유토론 II	[제2주제: 경제·사회 분야] • 부동산 및 가계부채 대책 • 노동문제(성과급제 등) • 세법 개정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채이배/윤소하/박용진/최연혜 토론자 답변 후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규칙) 설명 : 토론자당 약 12분 정도 ☞ 사회자 Bridge	55분 (48분30초)	11:51:00		
6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윤소하 → 박용진 → 최연혜 → 채이배 토론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5분 (4분)	11:56:00		
7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11:57:00	S/T F.S	
8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7:10	VCR	

3.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

[시행 2017. 3. 9.] [법률 제14571호, 2017. 3. 9., 일부개정]

제82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2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5.8.13.>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 이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개정 2010.1.25.>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 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⑧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2008.2.29.>

⑪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8.4.>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⑭ 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결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결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③ 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중전 제82조의3은 제82조의4로 이동 <2004.3.12.>]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④ (생략)

⑤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1.25., 2014.2.13.>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 <개정 2017.2.24.>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만원)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7.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행위	○ 법 제261조제5항· 법 제82조의2제4항	400	가. 매회마다 : 400

【 정당법 】

[시행 2016. 4. 16.] [법률 제13757호, 2016. 1. 15., 일부개정]

제39조(정책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3호, 2016. 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3조(협조요구)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12.23.>

② 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1.25.>

제5조(직무)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 ② 시·도토론회원은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회원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 ③ 구·시·군토론회원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제5조의2(사무의 대행)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회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회원으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토론회원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회원이 개최할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회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8.4.]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각급토론회원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0.1.2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회원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목개정 2005.8.4.]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1.25.>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가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회원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8조(상임위원) ① 중앙토론회원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③ 상임위원은 중앙토론회원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급토론회원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회원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공영방송사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공영방송사의 요구가 있는 때
6. 법 제8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임·해촉 또는 파면된 때
7.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4., 2010.1.25.>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도토론위원회 및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2.16., 2008.3.24.>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대한다. <개정 2010.1.25.>

제14조(위원회의)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안표지·의안대상·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15조(위원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담·토론의 진행방식, 주제·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5.>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등)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제3장 사무기구

제19조(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방송토론팀과 토론지원팀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2013.11.25., 2014.5.27.>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5.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6. 시·도토론위원회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8.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9.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0.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1. 그 밖에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④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제20조(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시·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후보과장이 겸임한다.

② 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1.25.>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4.>

1.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5.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 ① 구·시·군토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0.1.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1.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대담·토론회) 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 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⑥ 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대담·토론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2016.1.15.>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⑧ 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비초청대상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동의하거나 비초청대상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산설 2005.8.4., 2010.1.25.>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①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정책토론회) ① 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정당법」에 따른 정책토론회는 개최일 전 20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 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 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0.1.25.>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제27조(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 공영방송사는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2조의2제11항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반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5.>

제28조(토론회등의 공표·홍보)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 등의 성명, 사회자의 성명, 대담·토론회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의 시설·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제1호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제30조(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 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목개정 2013.11.25.]

제33조(예산집행) 토론회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회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회위원회는 당해 토론회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회위원회가 정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훈령 제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소집) ① 각급토론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회의 개최일전 2일까지 위원에게 개최일시 및 장소, 의안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소집 및 의안 등의 통지는 서면(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조(의안) ① 의안은 의결사항,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의결사항

규칙 제5조에 따른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와 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초청후보자 선정, 사회자 선정, 주제 및 질문사항 선정, 토론진행방식 결정, 그 밖에 해당 토론회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항

2. 보고사항

가. 법령 및 각종 사무편람·지침 등에서 해당 토론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토론회위원회 사무국(간사장을 포함한다)에 보고를 요청한 사항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다. 토론회위원회 관련 법규의 제정·개정 등 위원들의 검토를 요하는 사항

② 의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의안대장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안처리절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의사일정표에 따라 의안을 상정(上程)한다. 다만, 위원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안처리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때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 의안처리결과 공표 또는 정회(停會), 산회(散會), 휴회(休會), 폐회(閉會) 등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때마다 의사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 또는 검토를 위해 해당 토론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서면의결) ① 각급토론회위원회는 위원회의에 상정(上程)할 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일상적·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의안으로써 심사·검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면의결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준용한 의결록에 의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사무국장·간사장 및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결석위원, 배석자
3. 상정(上程) 의안
4. 의안별 공개·비공개 결정사항
5.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6. 개최·폐회시간, 산회(散會)·정회(停會)·휴회(休會)·개의(開議)시간 등

③ 회의록의 간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있다.

제7조(녹음 등)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발언내용의 정확한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녹음 또는 속기할 수 있다.

② 녹음 또는 속기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확인 등) ① 회의록은 다음 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회의록의 수정(修正)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토론위원회의 동의(同議)를 받아야 한다.

제9조(회의록의 보존 등) ① 회의록은 각급토론위원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원본은 회차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한다.

② 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된 의안이 있는 경우 그 회의록 우측 상단의 여백에 별지 서식에 따라 빨간색으로 **비공개** 라고 표시한다.

③ 회의록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 및 보존·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회의록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에 따라 해당 회의록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위원, 결석위원, 배석자 명단, 발언내용에 관한 해당 발언자의 직책 및 이름, 발언내용 중에 기재된 위원 기타 특정 개인의 이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③ 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된 의안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간사를 지정하되, 간사 중 1인은 간사장으로 지정한다.

② 간사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한다. 다만, 지도담당관을 두고 있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담당관을 간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시·군토론위원회의 간사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에 상정(上程)할 의안의 정리·배부, 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회의의 운영과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론회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하며 간사장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

[개정 2017. 1. 2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17-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의 주관·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자의 선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토론자의 토론회를 포함한다. 이하 "토론회"라 한다)의 사회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제3조(질문자의 선정) ①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③ 질문자는 해당 토론회 시작 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후보자 또는 후보자 관계자와 토론회와 관련된 정보나 의견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4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정 등) ①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참석할 토론자(후보자 또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토론자"라 한다)의 수를 예상하여 단일 또는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통지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참석할 토론자 수가 달라져 진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질문사항의 수집과 공개여부) ① 토론위원회는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수집하여 토론회의 질문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론위원회는 질문사항의 요지 또는 내용의 공개여부를 정하되 토론방법 등에 따라 질문사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토론회장의 설비) ① 토론위원회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를 지정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7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토론회장 설비 내용을 개최일 전일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1. 토론자와 사회자, 질문자 등의 위치
2. 토론자와 사회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3. 토론회와 관련된 음향 및 영상에 필요한 주요장비 및 시설

② 토론회장의 구조는 어느 쪽에서 토론자를 카메라로 비추어도 토론자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양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③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후보자가 불참을 통보하여 오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론자의 좌석 등을 설비하지 아니하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좌석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7조(토론회의 청중)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의 설비나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중을 둘 수 있다.

1. 일반 유권자
2.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의 회원 등
3. 토론위원회가 참석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추천을 의뢰한 인원

② 청중은 토론회의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토론자의 착용·부착물)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윗옷·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다.

제9조(참고자료의 사용) 토론자는 토론회에서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1·23]

제10조(토론회의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② 질문자는 사전에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질문사항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 ③ 토론자는 토론회의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 ④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토론자가 불참하거나 참석 토론자가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사회자를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자막으로 표출하게 한다.

제11조(중계방송) ① 토론회의 중계를 주관하는 방송사(이하 "중계주관방송사"라 한다)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한다)의 토론회 중계방송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중계주관방송사가 토론회의 방송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면구성은 토론시간 최대한 균등하도록 한다.
 2. 기초연설과 맺음말을 하는 경우에는 발언하는 토론자만을 비추도록 한다.
 3. 토론회의 중계 도중 선거관련 속보를 자막 등의 형태로 방영할 수 없다.

제12조(재방송)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전에 모든 토론자와 해당 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토론회의 재방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토론회의 발언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2.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 전원이 재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3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 제2015-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5조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정 등 공개)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개최일전 2일까지 위원회의의 일시, 장소, 의안(이하 "일정등"이라 한다)을 각급토론위원회 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론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회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국민에게 무용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

4.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각급토론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의안의 전부 또는 각 의안별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위원회의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위원회의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방청) ① 위원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의 개최일 전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청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의 방청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일정등을 공개할 때에 방청의 허가 여부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④ 방청인은 방청이 허가된 의안에 대해서만 방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에서 의안의 심사·의결이 종료되면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의 방청을 허가받은 사람은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고, 개회(開會) 전까지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⑥ 각급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신분증명서를 보관한 후 방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방청인이 위원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출입증을 달아야 한다.

제5조(방청석 설비) 각급토론위원회는 방청인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석을 마련하되, 위원회의장과 방청석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방청의 제한) ① 위원장은 무기·흉기·폭발물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장과 방청석의 질서유지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방청인은 해당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제7조(녹음 등 허가) ① 방청인은 위원장의 허가없이 위원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청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위원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전허가 없이 위원회의를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하기 위하여 녹음기, 캠코더, 카메라, 방송장비 등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어깨띠, 윗옷(上衣), 표찰(標札), 손팻말(手旗), 그 밖의 소품을 이용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퇴장명령)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방청이 허가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방청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개정 2016. 7. 26.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예규 제2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토론위원회"라 한다)가 주최하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토론을 진흥하고 대학생의 올바른 토론관 정립과 주권인식 함양을 통하여 민주시민토론문화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대회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라 칭한다.

제3조 (주최 및 주관) 중앙토론위원회는 매년 전국대학생토론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를 주최하고, 학회 및 대학교 등과 공동주관할 수 있다.

제4조 (개최시기 등) 개최시기·장소, 기간 및 일정 등은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 (조직) ①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토론위원회에 대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이 겸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1. 내부

가. 중앙토론위원회 소속 팀장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부서장

다. 개최지 관할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신설 2016. 7. 26>

2. 외부

가. 학회장이 추천하는 학회 임원과 심사위원장 <개정 2016. 7. 26>

나. 대학교 대외협력 부서장

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자 <개정 2016. 7. 26>

④ 임기는 매년 대회 결선일 후 30일까지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 보조 및 기관 간의 업무 협의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중앙토론위원회와 학회 및 대학교 등 공동주관하는 기관·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1명을 운영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중앙토론위원회 소속 간사를 수석간사로 한다.

제6조 (직무) ①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토론논제와 경기방식 및 규칙에 관한 사항

3. 심사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26>

② 운영위원회는 대회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제7조 (운영) ①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대회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 중 중앙토론위원회 소속 대회 업무 관련 주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삭제 <2016. 7. 26>

제8조 (자문위원)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지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학회 및 대학교 등 소속 직원 중에서 약간 명

일반전형
운영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권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제·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권리

정책토론회 권리

민주시민토론문화 육성

제도개선 연구

부록

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 (수당의 지급)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외부 위원·간사 및 자문위원에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제10조 (사무분장) 운영위원회 내에 대회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으로 대회 관리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제3장 참가자격 및 신청

제11조 (자격 등) ① 본 대회는 참가신청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2. 국외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재외국민과 그 자녀에 한하며, 휴학생을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 역대 본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람
2.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3. 정당한 사유없이 전년도 대회에 불참한 사람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람

제12조 (참가신청과 접수) ① 본 대회의 참가신청은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등록사이트를 이용하여 하되, 참가신청서와 재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가신청은 접수순위에 따라 128개 팀까지로 한다.

③ 참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접수순위는 등록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제13조에 따라 신청 철회 및 불참 팀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150개 팀에 이를 때까지 접수하되, 접수순위 129순위부터는 대기팀으로 처리한다. 다만, 대기팀의 효력은 대회개시일전 10일까지로 한다.

⑥ 팀은 2명으로 구성하며, 동일 학교 학생 또는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로 구성할 수 있다.

⑦ 팀원 교체는 부득이한 경우, 참가신청 등록완료 후 1회에 한하여 대회개시일전 14일까지 등록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제13조 (신청 보완 및 불참) ① 참가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참가신청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직접 보완할 수 있으며, 중앙토론위원회가 흠결을 발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참가신청자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② 제11조의 참가자격 및 제12조에 따른 증명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중앙토론위원회가 이를 보완 또는 확인을 요구함에도 참가신청자가 3일 이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7. 26>

③ 부득이한 사유로 대회에 불참하고자 하는 팀은 대회개시일전 14일까지 불참사실을 중앙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없이 대회에 불참(대회개시일 등록마감시까지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연도 대회의 참가를 제한한다. <개정 2016. 7. 26>

제4장 대회 논제

제14조 (논제 공모)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논제를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② 논제는 정치, 선거와 관련된 사항 및 대학생들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내용 등으로 한다.

제15조 (검증단)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과 역대 대회 수상자 중에서 약간 명의 검증단을 둘 수 있다.

② 검증단은 논제의 찬성과 반대 주장의 균형성과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검증의견을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③ 검증단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외부 검증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 (논제 선정등)** ① 논제는 찬성과 반대 주장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예선과 본선에 대한 논제를 각각 선정할 수 있으며, 결선의 경우에는 예선과 본선 논제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논제는 대회개시일전 2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대회 방식

- 제17조 (조 편성 및 대진표 작성)** ① 예선대회의 조 편성은 4개 팀 1개 조로 한다. 다만, 참가신청 팀이 128개 팀에 미달하거나 불참하는 팀이 있는 경우에는 3개 팀 1개 조 또는 2개 팀 1개 조로 편성하여 대진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 ② 조 편성은 무작위로 정하되, 동일 대학교 소속의 팀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③ 부전승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대진표를 작성한다. <신설 2016. 7. 26>

- 제18조 (경기방식, 규칙 등의 결정)** ① 본 대회의 경기방식과 규칙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본 대회는 예선과 본선 및 결선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2팀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논제에 대하여 한 팀은 찬성 의견, 다른 팀은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③ 예선은 조별로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하며, 본선은 64개팀을 대상으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 제19조 (예선 및 본선)** ① 경기진행방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1회의 총 경기시간은 15분 이상 20분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26>
1. 찬성팀 기초연설(1분)
 2. 반대팀 기초연설(1분)
 3. 찬성팀과 반대팀 간 자유토론(예선은 각 6분, 본선은 각 8분) <개정 2016. 7. 26>
 4. 반대팀 맺음말(1분)
 5. 찬성팀 맺음말(1분)
- ② 제1항의 진행방식별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별 결과에서 승수가 많은 팀이 승리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예선대회에 있어서는 각 조의 다승순 1, 2위팀이 본선에 진출하되, 승수가 같은 경우 승자승, 득점(각 팀이 얻은 총 점수) 순으로 한다.

- 제20조 (결선)** ① 결선은 4강에 진출한 4개 팀을 대상으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 ② 1회의 총 경기시간, 경기 진행방식과 진행방식별 시간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이 경우 결선 참가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결선에는 사회자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사회자는 공정하게 대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6>

- 제21조 (경기규칙)** ① 찬성팀과 반대팀의 결정은 각 경기에 앞서 팀별로 찬성과 반대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결정하고 경합시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② 참가자가 소지할 수 있는 자료는 찬성과 반대 자료를 포함하여 팀당 A4용지 규격 범위 내에서 10장 이하로 하며, 어떠한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결선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자유토론의 경우 반대팀부터 발언하며, 팀당 1회 발언시간은 2분을 넘지 못한다.
- ④ 전체 토론시간은 각 팀의 팀원마다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⑤ 참가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토론 중에 제시·이용되는 자료에 대한 출처나 근거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참가자는 경기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팀원이 아닌 사람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사소통 하는 행위
 2. 무례한 동작 또는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특정인을 차별하는 행위
 3. 심사위원에게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 ⑦ 참가자가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5점 범위 이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

- 제22조 (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 ① 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은 자유토론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손을 드는 등 발언자를 향하여 적절한 동작을 취한다.

2. “질문있습니다” 등의 말로 주의를 끈다.

② 제1항의 제기를 받은 발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답해야 한다.

1. 답변을 거부하는 분명한 몸짓이나 손짓을 한다.

2. 거부 의사를 구두로 밝힌다.

3. “잠시 기다립시오” 등과 같은 말로 잠시 보류한 후 수용한다.

③ 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답변을 거부당한 후에는 다시 질문할 수 없다.

2. 상대방이 답변을 시작하고 있을 때에는 질문할 수 없다.

④ 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 팀의 발언시간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6. 7. 26>

⑤ 제1항의 제기를 받은 발언자는 질문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발언 중 최소 2회의 질문 제기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제23조 (발언시간관리시스템) ① 참가자의 발언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대회장에 발언시간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발언시간관리시스템은 노트북과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며, 모니터에는 팀별 총 발언시간과 잔여시간이 표시된다.

③ 심사위원과 참가자는 발언시간관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각 경기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대회의 심사

제24조 (심사기준 등)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를 심사한다. <개정 2016. 7. 26>

1. 주장의 근거와 논리적 타당성

2. 내용 구성력, 창의력과 순발력, 이해력과 대응력 및 일관성

3. 전달력

4. 토론태도와 협동성

5. 제21조(경기규칙)제7항에 따른 감점기준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별표 [심사표]에 의하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은 대학교 교수 및 관련 업무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하는 외부 심사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 내부 심사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본 대회의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회는 경기당 3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장은 외부 심사위원 중 1명으로 한다.

③ 결선은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두되, 대회 심사위원장,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과 국회의원, 변호사 기타 토론 전문가 중에서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7. 26>

④ 심사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심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⑤ 모든 심사위원은 대회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심사위원장, 심사장) ① 제5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6. 7. 26>

1. 심사위원 자격 판단

2.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들의 토론 심사 능력 평가

3. 대회 시작 전 심사위원 교육

4. 기타 대회의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

② 심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6. 7. 26>

1. 경기진행 및 결과 기록 관리 등

2. 각 경기별 무승부가 발생한 경우 승패의 결정

3. 경기 진행 중에 제기된 이의 처리

4. 제30조(참가자수칙)제1항의 위반사항 적발 시 처리

제27조 (심사원칙) ① 심사위원은 [별표] 심사표에 따라 보조자료([별지2] 토론흐름표)를 작성하여 심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1. 객관성 및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의 개인적 신념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 ② 모든 심사위원은 종교, 성별, 인종, 국적, 성적 선호도, 나이, 사회적 지위, 어투, 모든 장애에 대한 차별은 엄격히 금지된다.
- ③ 심사결과는 비공개하며, 다음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심사결과 등 기타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 ④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개정 2016. 7. 26>
 1. 발언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 성원, 아유를 하는 경우
 3. 팀원끼리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경우
 4. 발언 중인 참가자와 대화하는 경우
 5. 인신공격 발언을 하는 경우
 6. 다른 심사위원의 주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이 주의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 2016. 7. 26>
- ⑤ 해당 경기 전까지의 누적 심사 점수나 승리 전적은 해당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심사위원에게 심사 결과나 토론평가를 요청할 수 없다.
- ⑥ 팀원 중 한 명이 특정 경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

제28조 (심사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경기 방식 및 운용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되, 본인 경기에 한하여 다음 경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장 또는 해당 경기의 심사장을 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 ② 제1항에 대한 이의 제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회운영본부에서 처리하며, 이를 접수한 대회운영본부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참가자는 본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중앙토론회위원회는 홈페이지 또는 대회 안내 등을 통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7장 대회 진행

제29조 (대회운영본부) ① 운영위원회는 대회 중에 대회운영본부를 둔다.

- ② 대회운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예선, 본선, 결선 대회의 대진표 결정
 2. 경기장별 심사위원 배정
 3. 심사결과의 정리
 4. 각종 이의제기의 처리
- ③ 대회운영본부는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론대회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0조 (참가자 수칙) ① 모든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회와 관련된 모든 문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2. 금지된 참고자료를 토론장에 몰래 반입하는 행위
3. 토론 경기 진행 중 인터넷에 접속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
- ② 심사위원 또는 운영요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에게 알려야 하며,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팀을 실격처리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대회운영본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7. 26>
- ③ 제2항에 따라 실격패로 처리하는 경우의 점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패배한 팀은 각 구성원이 최하점을 받는다.
 2. 승리한 팀은 대회의 모든 토론에서 얻은 점수의 평균점을 받는다.

3. 점수는 대회가 모두 끝난 후 합산된다.

제31조 (참관자 수칙) ① 오디오 녹음과 비디오 녹화 장치는 대회운영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경기장에 반입할 수 없다.

② 모든 참관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람하고자 하는 경기 시작 10분전까지 대회운영본부에 도착하여 관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람 승인을 받은 참관자는 대회장에 정숙하게 입장하고 질서있게 착석한다.
3. 참가자를 소개할 때와 각 경기가 종료했을 때만 박수를 친다.

③ 모든 참관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대회장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
2. 대회장에 늦게 입장하거나 일찍 퇴장하는 행위
3. 토론이 진행중일때 대회장에서 진행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4. 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질문하는 행위

④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제3항에 해당하여 대회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참관자를 강제 퇴장시키고 이 사실을 대회 운영본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7. 26>

제32조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① 다른 참가자가 참가 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제기는 반드시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을 통해 대회운영본부에 보고되어야 <개정 2016. 7. 26>

1. 모든 형태의 폭력 또는 위협
2. 성희롱
3. 스토킹 또는 신체적 희롱
4.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불법 약물의 공급이나 소비
5.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대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참가자
6. 토론 참가자와 기타 대회 참가자 사이의 모든 부적절한 관계
7. 대회장소 내 사유재산이나 공공 시설물의 의도적인 훼손

② 대회운영본부는 제1항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의제기 대상자의 참가자격 박탈이나 정지 결정 <개정 2016. 7. 26>
2.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등 관계 당국에 통지

제8장 시상

제33조 (시상) ① 본 대회의 시상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상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2. 개인상 : 스피커상
3. 특별상

② 단체상 및 개인상, 특별상의 표창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34조 (훈격) ① 본 대회의 시상훈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
3. 스피커상 : 주관학회의 장
4. 특별상 : 후원기관·단체의 장

② 시상훈격은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 (상금의 지급) 제33조의 시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대상은 500만원 이하
2. 금상은 300만원 이하
3. 은상은 200만원 이하
4. 동상은 100만원 이하
5. 장려상은 50만원 이하
6. 특별상은 50만원 미만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그 상을 지급하는 기관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과 적용)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2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심사표
- [별지1] 참가신청서
- [별지2] 토론흐름표
- [별지3] 상장 서식

일반전형
영향행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제·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정책토론회 관리

민주시민토론회 문화 육성

제도개선 연구

부
록

[별표]

심 사 표

예선	제()조, 제()심사반	본선	64강, 32강, 16강, 8강	결선	준결승, 결승	
찬 성			반 대			
팀명					팀명	
성명					성명	
평가 영역 (배점)	평 가 항 목				평가 영역 (배점)	
/10	기조 연설	• 주장에 대한 근거가 논리적이고 타당한가?			기조 연설	/10
/40	자유 토론	• 논점을 잘 정리해서 질문하는가?(내용 구성력)			자유 토론	/40
		• 상대논리의 약점/모순점을 찾아낸 질문인가?(창의력, 순발력)				
		• 상대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는가?(이해력, 대응력)				
		•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가?(일관성)				
/10	맺음말	• 주장을 설득력 있게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였는가?			맺음말	/10
/20	전달력	• 다양한 수사적 기법을 활용하였는가? (메타포 등 사용 여부, 어휘, 문장구사력)			전달력	/20
		• 음성 전달은 적절하였는가?(빠르기, 크기, 고저, 강조, 어조)				
/20	토론 태도 팀워크	• 자세와 태도는 적절하며 토론 예절을 잘 지켰는가? (말꼬리 잡기 여부, 토론 자세 등)			토론 태도 팀워크	/20
		• 협력과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졌는가?				
	감점	규정 제21조제2항 내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5점범위이내)			감점	
총 점	찬성팀 심사의견		반대팀 심사의견		총 점	
	○ ○		○ ○			

심사위원 성명 :

서명 :

※ [별지2] 토론흐름표를 반드시 작성하고, 감점 시 심사의견란에 감점사유를 반드시 기재

[별지1]

제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참가 신청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0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 다음과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 접수번호	20 -		참가신청서		
팀 명	[6자 이내(7자 이상은 약칭)로 기재하되, 지역명·대학명칭은 사용 불가]				
사 진 1 (이미지 파일)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E-mail		핸드폰번호		
	소속대학	학교		학과	학년
		소재지(시·군·구)까지만 기재) :			
사 진 2 (이미지 파일)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E-mail		핸드폰번호		
	소속대학	학교		학과	학년
		소재지(시·군·구)까지만 기재) :			
숙박여부	2인 숙박		1인만 숙박(이름 기재)		2인 비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대회 운영 관련 통지 등 연락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소속대학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대회 참가 확인 등을 위한 기간(1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동의 미동의 참가자1 서명: _____
 동의 미동의 참가자2 서명: _____

일반전형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권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제·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권리
 정책토론회 권리
 민주시민토론회 운영
 제도개선 연구
 부록



[별지2]

토 론 흐 름 표

구 분	찬 성	반 대
팀 명		
기조연설		
자유토론		
맺음말		
비 고		

[별지3]

제 호

상 장

○○○^①

○○○^②

위 사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③와 공동주관한 제 ○^④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⑤

○○○^⑥ ○○○^⑦

주 : ① 상장명 ② 소속 및 성명 ③ 공동주관하는 기관명 ④ 제호 ⑤ 시상기관명
⑥ 시상기관의 장의 직위 ⑦ 시상기관의 장 성명



2016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례보고서

인 쇄 | 2017년 3월

발 행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
Tel. (02) 3473-9947

디자인 · 인쇄 | 렛츠디자인 (02) 2268-8658